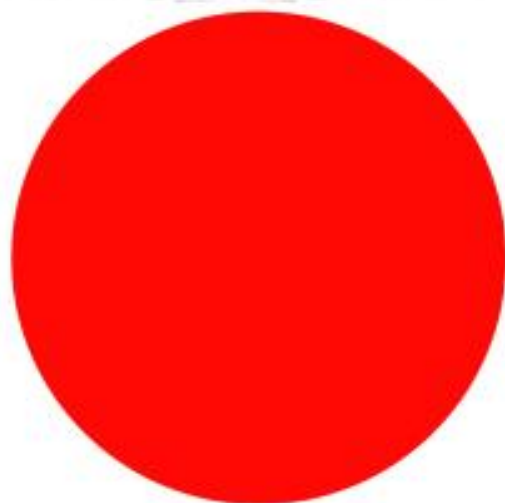


시청자 권익보호제도 일본편

2024.10



목 차

I.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보호 제도	1
1. 공영방송 제도	2
1) NHK	2
(1) 경영체계	3
(2) 서비스	6
(3) 재원	10
(4) 정책 및 가이드	13
(5) NHK 에 대한 국가의 감독	16
2) 방송대학학원	17
2. 민간방송 현황	19
1) 사업자 수	19
2) 시장규모	20
3) 가입자 수	21
4) 주요사업자	22
(1) 지상파방송	22
(2) 지역별 민방 지상파 TV 시청가능 채널 수	26
(3) 위성방송	27
(4) 케이블 TV	29

3. 주요 방송정책	34
1) 기간방송보급계획 및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34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43
3) 방송사업자 (재)허가인정 정책	46
(1) 지상파방송사	46
(2) 위성방송사	48
4) 4K · 8K 방송 정책	49
4. 방송심의	52
1) 방송사 자율심의	52
2)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	54
(1) 연혁	54
(2) 구조	55
(3) 3 개 위원회 운영규칙	57
5. 광고심의	65
1)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65
2) JARO 의 주요활동	65
II. '방송을 통한 피해로부터 보호·구제받을 권리' 보호 제도	69
1. 방송사	69
2.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71
3.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73

Ⅲ. '격차 없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제도	76
1. 장애인방송	76
1)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 노력 의무화	76
2) 행정지침	76
(1) 자막방송보급 행정지침(1997.11.)	76
(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보급 행정지침(2007.10.)	77
(3)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	80
3) 실시현황 공표	83
4)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프로그램 등의 제작 촉진	84
(1) 조성금 제도	84
(2)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육성에 관한 연수회	87
2. 재난방송	88
1) NHK	89
2) 임시재해방송국	92

I.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보호 제도



I.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보호 제도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50년 6월까지 전파청이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해 하였다. 1950년 6월에는 미국 FCC를 모델삼아 총리부 외국(外局)에 독립행정위원회인 전파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해 하였다. 그러나 독립행정위원회는 책임의 명확성을 결여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952년 전파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우정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하였다. 2001년 1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정성이 총무성에 통합되었다. 총무성은 우정성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 행정, 규제 업무를 계승하였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情報流通行政局)은 정보의 전자적 유통 규율 및 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기획 및 입안과 추진, 방송 관련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 시설의 설치 및 사용 규율,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 시설의 정비 촉진, 국제방송 및 그 밖에 일본과 외국 간 정보의 전자적 유통 촉진, 정보통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유통 원활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 방송업의 발달·개선 및 조정, 우정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종합통신기반국(総合通信基盤局)은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시설의 설치 및 사용 규율, 전기통신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 비상사태에서 중요 통신 확보, 주파수 할당 및 전파 감독 관리, 전파 감시 및 품질 개선, 불법 개설 무선국 및 불법 설치된 고주파 이용설비 탐사, 전파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 전파의 이용 촉진, 분배된 주파수 사용 및 국제협력 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

일본의 방송규율 목적은 공공복지 증진과 방송의 건전한 발달이다. 일본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최대한 보급과 효용성 보장, 방송의 불편부당과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하여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보, 방송종사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방송을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²⁾

일본의 방송체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는 국내방송과 국제방송을 제공한다. 국내방송에는 지상파TV 2개, 라디오방송 3개, 위성TV 3개 등 총 8개 채널이 있다. 국제방송에는 NHK WORLD JAPAN이 있다. 해외 거주 자국민을 위한 일본어 TV방송, 외국인을 위한 영어 TV방송, 18개 언어로 세계 각지에 제공하는 라디오방송을 운영한다. 방송광고, 이용요금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은 지상파방송사, 위성방송사, 케이블TV사로 나뉜다. 2022년 말 기준 지상파 534개사(339개 커뮤니티방송사 포함), 위성 42개사, 케이블TV 464개사(2021년 기준)가 있다.

1) https://www.soumu.go.jp/menu_sosiki/index.html

2)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32>

1. 공영방송 제도

1) NHK

NHK(日本放送協会, Nippon Hoso Kyobai)는 일본 공영방송사이다. 전신은 1925년 3월 라디오방송으로 시작된 도쿄방송국(Tokyo Broadcasting Station)이다. 1926년 도쿄방송국을 포함한 3개 방송국 합병으로 NHK가 설립되었으며, 1950년 6월 1일 「방송법」에 의거 공영방송사로 재편되었다.

「방송법」 제15조부터 제27조는 NHK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에서 NHK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전국에서 널리 수신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내기간방송을 실시하고, 동시에 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고 더불어 국제방송 및 협회국제위성방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이에 NHK는 자사의 궁극적 임무(mission)를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 NHK는 공정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정부나 민간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평가(rating) 또는 제3자 이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광범위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 NHK 구성 >



※ 출처: NHK Corporate Profile 2023-2024, p. 2.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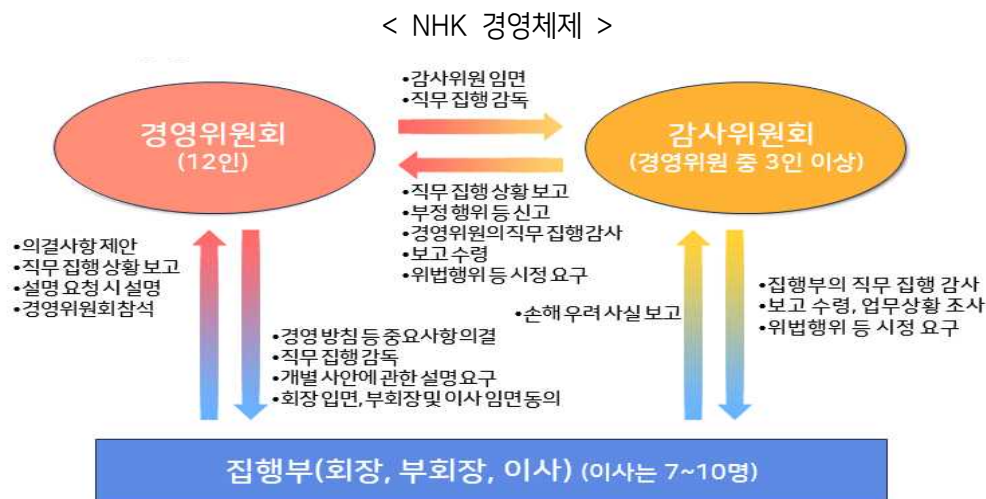
3)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32/>

4) <https://www.nhk.or.jp/corporateinfo/about/assets/pdf/plan2024-2026.pdf>

5) https://www.nhk.or.jp/corporateinfo/about/assets/pdf/profile_2023-2024.pdf

(1) 경영체제

NHK 경영체제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집행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내부통제에 관한 체제정비를 시작으로 매년도 예산·사업계획, 프로그램 편집 기본계획 등을 결정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위원회는 회장 이하 임원에 대한 목표관리,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처우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권한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모임을 각지에서 개최한다.



※ 출처 : <https://www.nhk.or.jp/keiei-iinkai/about/index.html>

① NHK 경영위원회⁶⁾

일본 「방송법」 제28조부터 제41조는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NHK의 경영 방침이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8월 현재 위원장 1명, 위원장직무대행 1명, 위원 9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직무대행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공공복지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국민의 대표인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선임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등 각 분야 및 전국 각 지방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결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 재임이 가능하며,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새로

6) <https://www.nhk.or.jp/keiei-iinkai/index.html>

7) <https://www.nhk.or.jp/keiei-iinkai/member/list.html#top>

운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동일 정당에 속한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할 수 없다. 5명 이상인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4명이 되도록 파면한다.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례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소집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직무대행 및 6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장은 3개월에 1회 이상 자신의 직무집행 상황,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고충, 기타 의견과 그 처리결과의 개요를 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경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영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9년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경영위원회 활동 중 하나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경영위원회 위원이 시청자로부터 NHK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이다. 경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출석하여 전국 각지에서 매년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⁸⁾

② 감사위원회

「방송법」 제42조부터 제48조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위원 중 3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구성된다. 2024년 현재 감사위원회는 상근 1명, 비상근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NHK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원회에 활동 내용을 보고한다.

감사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경영위원을 포함한 임원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NHK의 업무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은 경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임원이 NHK의 목적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등 NHK에 현저한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할 수도 있다.⁹⁾ NHK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시방침·계획, 활동결과보고, 의견서,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¹⁰⁾에 게시하고 있다.

8) <https://www.nhk.or.jp/keiei-iinkai/hearing/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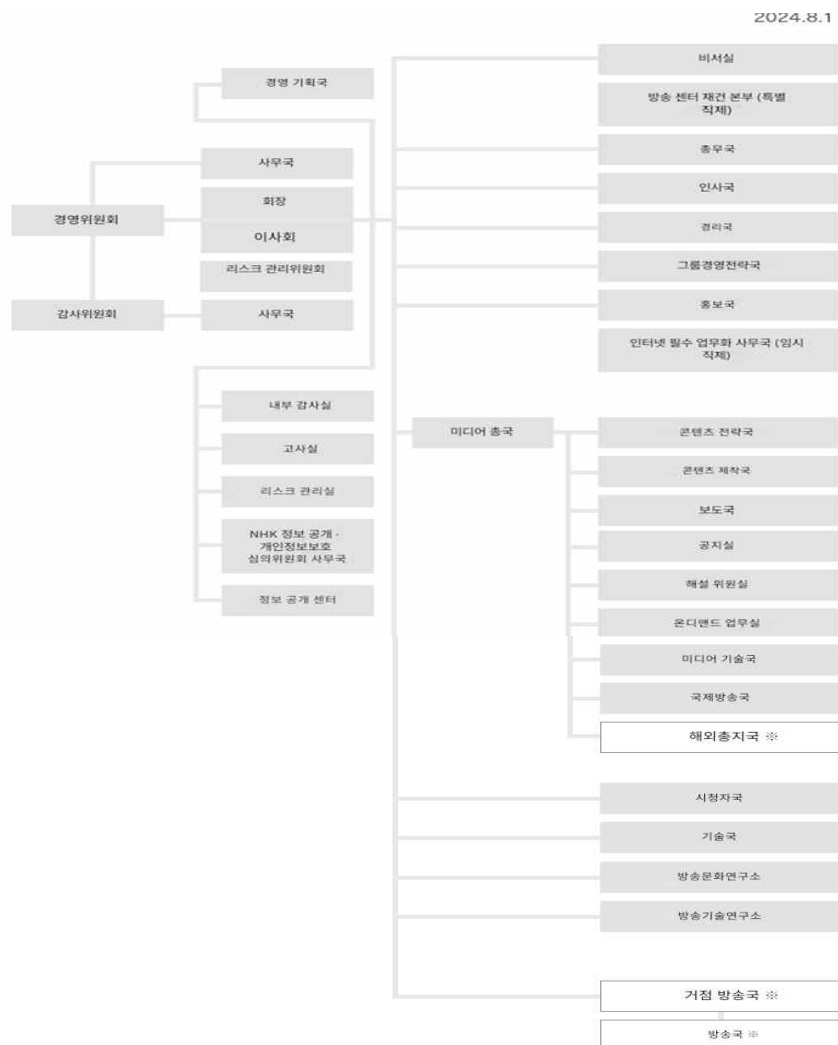
9) <https://www.nhk.or.jp/kansa-iinkai/about/index.html>

10) <https://www.nhk.or.jp/kansa-iinkai/about/regulation.html>

③ 집행부

「방송법」 제49조부터 제63조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NHK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2024년 8월 1일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0명의 임원이 있다.¹¹⁾ 회장은 경영위원회가 임명한다. 회장은 경영위원회 위원 9명 이상 다수에 의한 의결에 의하여 임명된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 NHK 조직도 >



※ 출처 : <https://www.nhk.or.jp/info/pr/organigram/>

11) <https://www.nhk.or.jp/info/pr/yakuin/>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NHK 중요업무 집행에 관하여 심의한다.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집 기본계획」, 「예산·사업계획」 등 경영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NHK 각 부나 국으로부터 업무수행 상황 등의 보고를 받아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다. 또 이사회의 개최일시, 출석자명, 의안, 의사의 개요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¹²⁾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회장 및 이사회가 있다. 회장 및 이사회 산하에는 경영기획국, 내부감사국, 고사실(考査室), 리스크관리실, NHK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사무국, 정보공개센터, 비서실, 방송센터 재건축본부(특별직제), 총무국, 인사국, 경리국, 그룹경영전략국, 홍보국, 인터넷필수업무화사무국(임시직제), 미디어총국, 시청자국, 기술국, 방송문화연구소, 방송기술연구소, 거점방송국, 방송국이 있다. 미디어총국 산하에는 콘텐츠전략국, 콘텐츠제작국, 보도국, 안내실, 해설위원실, 주문형업무실, 미디어기술국, 국제방송국, 해외총지국이 있다.

(2) 서비스

① 방송서비스

NHK 국내방송에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BS방송)이 있다. 지상파방송에는 2개 TV채널과 3개 라디오방송 채널이 있다. TV채널 중 NHK G(General TV)는 뉴스, 문화, 오락,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전국에 제공하는 종합채널이다. NHK E(Educational TV)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청자에게 필요한 교육, 복지, 문화, 취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채널이다. 라디오방송 채널에는 Radio 1, Radio 2, FM이 있다. Radio 1은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Radio 2는 청취자의 평생학습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FM은 청취자의 음악, 오락, 문화, 교육 등 청취자의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이다.

위성방송(BS방송)에는 NHK BS, NHK BSP4K, NHK BS8K 등 3개 TV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NHK BS는 뉴스,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한다. NHK BS P4K(NHK BS Premium 4K)는 NHK 콘텐츠 전반을 4K로 제공한다. NHK BS8K는 문화유산, 예술, 전통문화, 자연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8K 화질로 제공한다.

NHK 국제방송에는 NHK WORLD JAPAN이 있다. TV채널은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영어로 24시간 방송한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지상파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약 160개 국가 4억 2,000만 가구에 무료로 제공된다. NHK WORLD PREMIUM은 해외거주 시청자를 위하여 일본어로 제공되는 TV 채널이다. 뉴스, 드라마, 음악,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유료(subscription)로 제공한다. 요금은 지역의

12) <https://www.nhk.or.jp/info/pr/rijikai/>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 따라 다르다.

NHK WORLD JAPAN은 라디오방송을 제공한다. 뉴스, 시사, 문화, 일상생활, 일본어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18개 언어(Arabic, Bengali, Burmese, Chinese, English, French, Hindi, Indonesian, Japanese, Korean, Persian, Portuguese, Russian, Spanish, Swahili, Thai, Urdu, Vietnamese)로 제공한다. 6MHz에서 21MHz의 단파(shortwave)를 이용하는 관계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Ku 밴드 위성을 통하여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에서 수신할 수 있고, C밴드 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수신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다.¹³⁾

< NHK 국제방송 현황(2023년 4월 계획 기준) >

구분	TV		라디오
	재외일본인 대상	외국인 대상	재외 일본인 및 외국인 대상
방송시간	1일 약 5시간	1일 24시간	1일 총 75시간 7분
예산(2023 회계연도 NHK 예산)	198억엔(1,788억원)		49억엔(442억원)
언어	일본어	영어	18개 언어
서비스 지역	거의 모든 세계 전역		거의 모든 세계 전역
사용되는 위성 / 송신설비	외국위성, CATV 등		국내 송신국, 해외 중계국 등

* 외국인 대상 국제TV방송 방송시간에는 일본국제방송(Japan International Broadcasting; JIB)의 방송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영문판)」, p. 80.¹⁴⁾

② 디지털 서비스

NHK의 디지털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수신료 기반 무료 서비스에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의 NHK플러스(NHK+), NHK온라인, 인터넷 라디오를 들 수 있다. 재해 등 공익목적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무료이다. 반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NHK온디맨드, 방송을 마친 프로그램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유료이다.

●● NHK플러스(NHK+)

13) <https://www3.nhk.or.jp/nhkworld/en/faq/>

14)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eng/WP2023/pdf/01-chap4_sec3.pdf

2020년 4월 시작된 NHK플러스는 온라인(<https://plus.nhk.jp>)으로 지상파 종합TV(NHK G)와 교육TV(NHK E)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전송 서비스이다. PC는 웹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전용 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방송 후 7일 간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무료 서비스이다. 다만, 수신계약이 확인된 시청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ID를 등록해야 한다. 수신계약당 ID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고, ID당 최대 5명까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¹⁵⁾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미계약자는 인터넷으로도 NHK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2009년 5월 29일 온라인 동시전송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NHK플러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공공미디어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NHK 입장에서 온라인 동시전송은 중요한 과제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시청에서 이탈하여 동영상 전송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NHK플러스 출범 초기에는 운용설비 부족과 비용억제 등을 이유로 하루 19시간 정도 제공했다. NHK는 2022년 NHK플러스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4월부터 24시간 전송으로 확대했다. 8개 거점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국 뉴스도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이용가능 단말기도 모바일에서 TV로 확대하였다.¹⁷⁾

한편, 2021년 8월 총무성은 NHK에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동시전송에 관한 실증실험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신계약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NHK플러스를 비계약자로 확대하는 실증실험인 것이다.¹⁸⁾ 이에 NHK는 2022년 4월부터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최대 3,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서 3개월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고, 이후 대상이나 방법을 바꿔 복수회차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이 이를 어떻게 시청하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김혜인, 2022.2.16.)¹⁹⁾

총무성과 NHK가 이런 실증실험을 수행한 배경에는 수신료의 적절하고 공평한 부담방안 모색과 연결되어 있다. NHK플러스를 비계약자로 확대하는 것은 수신료 징수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국민들은 「방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NHK와 수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TV수상기뿐만 아니라 차량 내비게이션, 방송수신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신료 징수방식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총무성은 2020년 말 기준 수신계약 체결 대상자 중 17%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자와 계약 미체결자 간 불공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재호, 2023, 재인용).²⁰⁾

15) 안창현(2022), 온라인 동시전송 서비스 'NHK플러스', 시작 5개월 만에 90만 명 등록, 「해외방송정보」 2020년 10월호, KBS공영미디어연구소.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pmi/pc/board.html?smenu=25ac38>

16) 안창현(2019). 일본: NHK 동시전송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해외방송정보」, 2019년 7월호, KBS공영미디어연구소.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pmi/pc/board.html?smenu=25ac38>

17) 안창현(2022), 일본 공공미디어 NHK의 OTT전략과 수신료 제도, 「미디어 이슈&트렌드」 제49권, 100-111.

18) 안창현(2021). 총무성, NHK에 동시전송 확대 요청, 「해외방송정보」, 2021년 10월호, KBS공영미디어연구소.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pmi/pc/board.html?smenu=25ac38>

19) 김혜인, "NHK 수신계약 확대 실험 성공할까", 미디어스, 2022.2.16.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412>

20) 總務省(2022). <情報通信政策研>, 第6巻 第1號, p. 175; 이재호(2023). 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언론중재」 2023 여름호, 61쪽. 재인용.

2023년 개정 「방송법」은 수신계약에 필요한 각 기재조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NHK가 의무불이행자(수신계약 체결의무 이행을 연체한 자)에 대해 의무연체기간 동안의 수신료에 대해 증액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할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김동현·장석우, 2023.4.9.).²¹⁾

2019년을 정점으로 NHK의 수신료 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안창현, 2021).²²⁾ 수신료 납부 회피가 늘어나면서 「방송법」은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치권과 NHK는 2023년부터 수신료를 약 10% 인하하기로 했다(박은하, 2022.10.12.).²³⁾

❖ NHK 온라인

1995년부터 NHK 웹사이트(<https://www.nhk.or.jp>)에서는 뉴스, 날씨정보, TV 및 라디오 편성표, 개인 프로그램 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 기능, NHK의 경영정보 제공, 시청자 문의 섹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판독 기능, 재난정보 관련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넷라디오

2011년부터 NHK 웹사이트(<https://www.nhk.or.jp/radio/>)를 통하여 라디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K Radio 1, Radio 2, FM 라디오방송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캐치업(catch-up) 서비스를 제공한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청취할 수 있다.

< NHK 인터넷라디오 >



※ 출처 : <https://www.nhk.or.jp/radio/>; NHK Corporate Profile 2023-2024, p. 16.

21) 김동현·장석우, 'NHK 때려부수는 TV 완판'... 일 시청자들도 수신료에 뿔났다. 조선일보. 2023.4.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4/05/CR3DEHEG2VC6HHBJMCM022AGAU/

22) 안창현(2021). 총무성, NHK에 동시전송 확대 요청, 「해외방송정보」, 2021년 10월호, KBS공영미디어연구소.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pmi/pc/board.html?smenu=25ac38>

23) 박은하, "NHK 정치권 요구에 밀려 수신료 인하 결정", 경향신문, 2022.10.12.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210121600001>

❖ NHK온디맨드(NHK オンデマンド)

2008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NHK온디맨드는 유료VOD 서비스이다. 지상파TV와 위성TV에서 기 방송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료는 월 990엔이다. 편당 구입도 가능하다.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유넥스트(U-NEXT) 등 다른 OTT플랫폼으로도 제공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²⁴⁾

< NHK온디맨드 >



※ 출처: <https://www.nhk-ondemand.jp/#/0/>

(3) 재원

NHK는 「방송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NHK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며, 그 수단이 수신료이다. NHK 사업수입의 대부분은 수신료에서 충당한다.

「방송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하여 NHK 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NHK와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NHK 방송수신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522만 건을 정점으로 점차

24) <https://www.nhk-ondemand.jp/#/0/>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의 경우 4,448만 건(위성계약 2,266만 건, 지상계약 2,180만 건, 특별계약 2만 건)을 기록했다.

< NHK 방송수신계약 추이 >



※ 출처 :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 p. 131.²⁵⁾

2023년 10월 기준 NHK 월 수신료를 살펴보면, 지상파계약은 1,100엔, 위성계약은 1,950엔이다. 선납 시 할인이 적용되며 지불수단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어졌다. 2023년 10월 인하 전 수신료는 지상파계약 1,225엔(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불), 1,275엔(우편환 지불), 위성계약 2,170엔(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불), 2,220엔(우편환 지불)이었다.

< 수신료(세금포함, 2023년 10월 기준) >

계약유형	월간 수신료	6개월 선납	12개월 선납
지상파 계약(지상파만 시청)	1,100엔	6,309엔	12,276엔
위성 계약(지상파 및 위성 시청)	1,950엔	11,186엔	21,765엔

※ 출처 : NHK홈페이지²⁶⁾

25)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pdf/n2130000.pdf>

26) <https://www.nhk.or.jp/corporateinfo/viewer/receivingfee/>

2020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NHK의 수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사업수익은 2020년 7,204억 엔에서 2023년 6,440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수신료 수입은 2020년 6,974억 엔에서 2023년 6,240억 엔으로 줄었다. 2023년 10월 수신료 인하가 단행되면서 감소규모가 커졌으며, 부족분은 펀드에서 충당했다.

< NHK수지내역(단위:억엔) >

구분	FY2020(a)	FY2021(b)		FY2022(c)		FY2023(d)	
			(b-a)		(c-b)		(d-c)
총 사업수익	7,204	6,900	△304	6,890	△10	6,440	△450
수신료 수입	6,974	6,714	△260	6,700	△14	6,240	△460
총 사업지출	7,354	7,130	△224	6,890	△240	6,720	△170
증감	△149	△230	△80	0	230	△280	△280

※ 출처 : NHK Corporate Profile 2023-2024, p. 5.²⁷⁾

<2024-2026 경영계획>에서 NHK는 총사업수익이 2024년 6,021억 엔에서 2026년 5,945억 엔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신료 수입은 5,810억 엔에서 5,655억 엔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NHK 수지계획(단위:억엔) >

구분	FY2024(e)		FY2025(f)		FY2026(f)		FY2027
		(e-d)		(f-e)		(f-e)	
총 사업수익	6,021	△418	5,934	△87	5,945	11	5,900
수신료 수입	5,810	△429	5,730	△80	5,655	△75	5,700
총 사업지출	6,591	△128	6,334	△257	6,195	△139	5,900
증감	△570	△290	△400	170	△250	1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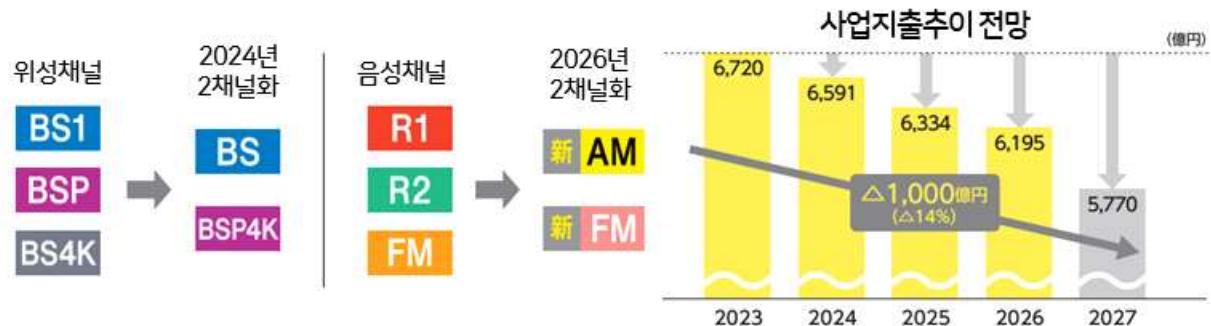
※ 출처 : NHK 경영계획 2024-2026년도 설명자료, p. 12.²⁸⁾

이에 NHK는 사업지출개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총량을 축소하고, 설비투자를 줄여 1,000억 엔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TV채널을 3개에서 2024년 2개로 줄이고, 라디오방송도 3개 채널에서 2개 채널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27) https://www.nhk.or.jp/corporateinfo/about/assets/pdf/profile_2023-2024.pdf

28) https://www.nhk.or.jp/info/pr/plan/assets/pdf/2024-2026_setsume.pdf

< NHK 사업지출개혁 >



※ 출처 : NHK 경영계획 2024-2026년도 설명자료, p. 11,29)

이 외에도 현행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청자와의 접점(디지털·서면·대면·외부단체 등)을 개발·확대하고, 계약신청·지불의 편리성이나 NHK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새로운 영업방식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혁명에 발맞춰 수신료 이외의 수입을 확대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HK는 수신료 비계약자에 대한 NHK플러스 제공방안도 시도하고 있다. NHK플러스 이용자가 확대될 경우 수신료 개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미 2017년 온라인 수신료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NHK회장 자문기구인 NHK수신료제도검토위원회(NHK受信料制度等検討委員会)는 동시전송 비용부담 방식으로 ① 모든 스마트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 ② 동시전송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③ 모든 가구에 부과하는 방식 ④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수신료와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³⁰⁾

(4) 정책 및 가이드

① 경영계획

NHK는 3년 단위로 경영계획을 발표한다. <2024-2026 경영계획>에서 NHK는 자사의 궁극적 사명을 '건강한 민주주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공간의 참조점'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다원성 확보'에 대한 공헌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NHK는 '긴급보도에서부터 국제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공공적 가치를 창조(콘텐츠 전략 6가지 기둥)³¹⁾ 그리고 '정보공간 전체의 다양성확보에 대한

29) https://www.nhk.or.jp/info/pr/plan/assets/pdf/2024-2026_setsumei.pdf

30) 안창현(2022), 일본 공공미디어 NHK의 OTT전략과 수신료 제도, 『미디어 이슈&트렌드』 제49권, 100-111.

31) 콘텐츠 전략 6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과 방송이 연계하여 재해 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다. 이는 자연재해의 빈발, 극심화에 대한 강점을 살려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보도' 심화를 말한다. ② "페이크" 시대이므로 더욱 얼굴이 보이는 신뢰의 저널리즘이다. 이는 가짜뉴스, 필터 등의 과제에 세계 언론사와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③ 민주주의의 일익을 담당하여 평화롭고 지속

공헌'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NHK, 2024).³²⁾

② NHK프로그램기준(日本放送協会番組基準)³³⁾

NHK는 <국내프로그램기준>과 <국제프로그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프로그램기준>은 1959년 7월 제정, 1995년 9월과 1998년 5월 개정되었다. 전문에서는 공영방송 기관으로서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의 입장을 준수하여 방송에 의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풍요롭고 좋은 방송을 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문화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일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 인권·인격·명예, 제2항 인종·민족·국제관계, 제3항 종교, 제4항 정치·경제, 제5항 논쟁·재판, 제7항 지역문화, 제8항 가정, 제9항 풍속, 제10항 범죄, 제11항 표현, 제12항 광고, 제13항 현상, 제14항 정정으로 이뤄져 있다. 제2장은 각종 프로그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 교양프로그램, 제2항 교육프로그램, 제3항 학교방송 프로그램, 제4항 아동용 프로그램, 제5항 보도프로그램, 제6항 스포츠프로그램, 제7항 예능프로그램, 제8항 오락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국제프로그램기준>은 1959년 제정되고, 1994년 11월, 2008년 4월, 2011년 6월 개정되었다. 전문에서 NHK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방송기관으로서 외국인용 및 일본인용 국제방송 및 국제위성방송을 통해 외국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간 문화 및 경제교류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국제친선과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동시에 일본인에게 적절한 보도 및 오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기준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장 일반기준은 5개 호로 이뤄져 있다. 1호는 편집에서 인권 존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한다. 2호는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일본의 중요 정책과 국제문제에 대한 공적 견해 및 일본 여론 동향을 올바르게 전한다. 3호는 외국인용 방송에서는 국내 문화, 산업 등의 실정을 소개한다. 4호는 방송프로그램 편집에서는 <국내프로그램기준>의 제1장 방송프로그램 일반기준을 준용한다. 단 외국인용 방송은 제4항의2, 제6항의1, 제7항, 제14항을 참조한다. 제2장은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호는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상호 조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호는 각 지역의 정체성·민족·종교·풍속·습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제3장은 각종 방송프로그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 보도프로그램에서 1호는 뉴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진실을 전달한다, 2호는 해설·논조는 공정한 비판과 견해를 토대로 일본의 입장을

가능한 세계의 구축에 공헌이다. 이는 정보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세계에서 빛나는 양질의 교육, 유아 어린이 콘텐츠이다. 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말한다. ⑤ 미래를 바라보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 엔터테인먼트이다. 이는 방송 100년을 맞이한 미디어로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인간의 미래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말한다. ⑥ 다양한 장르와 지역 정보로 다양성, 다원성 실현이다. NHK 인기 정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네트워크를 살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32) NHK경영계획 2024-2026년도 설명자료, https://www.nhk.or.jp/info/pr/plan/assets/pdf/2024-2026_setsume.pdf

33) <https://www.nhk.or.jp/info/pr/ki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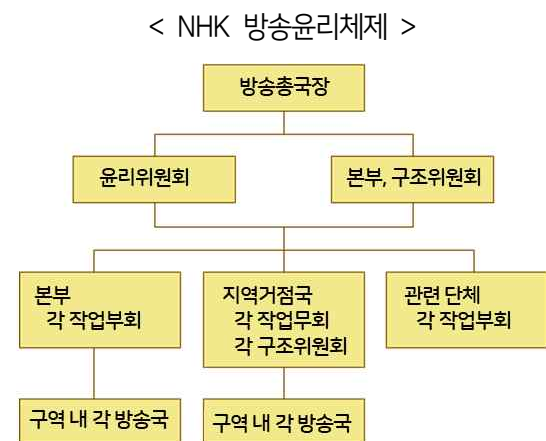
분명히 한다, 3호는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2항 정보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능·과학·관광 등 국내와 세계의 실정을 소개하고 국내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항 오락프로그램은 품위 있고 건전한 오락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정정에서는 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을 때는 신속히 취소 또는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방송가이드라인(인터넷 가이드라인 통합)³⁴⁾

2020년 개정된 <방송가이드라인(인터넷 가이드라인 통합)>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자주·자율의 견지, 제2장 방송의 기본적 자세, 제3장 인터넷에서의 정보발산, 제4장 컴플라이언스- 법령 및 규칙준수, 제5장 취재·제작의 기본틀, 제6장 표현, 제7장 정보 및 선전·광고, 제8장 저작권, 제9장 이용자정보 취급, 제10장 국제방송, 제11장 사건·사고, 제12장 재해·비상 사태, 제13장 생활과 사회, 제14장 정치·선거·경제 여론조사, 제15장 국제·해외 취재, 제16장 취재·제작의 위탁, 제17장 엄정한 경리처리, 제18장 심의있는 대응으로 이뤄져 있다.

④ 방송윤리

NHK는 「NHK윤리·행동헌장」,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다.³⁵⁾ 또한 1996년 9월 일본민간방송연맹과 공동으로 '방송윤리 기본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³⁶⁾ 방송윤리 체제와 관련하여, NHK는 방송총국장 산하 '방송현장의 윤리에 관한 위원회(윤리위원회)'와 '본부·구조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방송윤리에 대한 일상적 자기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본부·구조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정정 또는 취소방송 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 또는 취소방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관이다. 이들 위원회 산하 각 작업부회는 윤리위원회와 제휴하면서 그 방침을 방송현장에 주지하고 지도하는 한편 방송윤리 활동에 대한 계획·보고·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관으로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가 있다.³⁷⁾



※ 출처 : NHK 홈페이지

34) <https://www.nhk.or.jp/info/pr/bc-guideline/assets/pdf/guideline2020.pdf>

35) <https://www.nhk.or.jp/info/pr/guideline/>

36) <https://www.nhk.or.jp/info/pr/rinri/>

37) <https://www.bpo.gr.jp/>

⑤ NHK 출연자에 대한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

<NHK국내프로그램기준>, <NHK국제프로그램기준>, <NHK방송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출연자의 인권,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NHK 출연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³⁸⁾

(5) NHK에 대한 국가의 감독

①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국회 승인

NHK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종료된다(「방송법」 제68조). 회계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원칙을 따른다(「방송법」 제70조). NHK는 매 사업연도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연도와 관련된 중기경영계획을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총무대신은 NHK가 제출한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리하였을 때,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이고 중기경영계획을 첨부하여 내각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신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수신료 금액은 국회가 앞서의 수지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정한다(「방송법」 제70조).

② 중기경영계획 공표

「방송법」 제71조의2에 의거, NHK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마다 경영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다. 중기경영계획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① 중기경영계획의 기간 ② NHK의 경영에 관한 기본방향 ③ NHK가 실시하는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④ NHK의 업무와 NHK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집단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관한 사항 ⑤ 수신료의 체계 및 수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신료에 관한 사항 ⑥ 수지전망 ⑦ 그 밖에 NHK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다.

③ 업무보고서 국회 보고

「방송법」 제72조에 의거 NHK는 매 사업연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38) <https://www.nhk.or.jp/info/pr/jinken/>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보고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무대신은 NHK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수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이고 감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내각을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출의 제한

「방송법」 제73조에 의거 NHK의 수입은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 제20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회계처리와 구분하고 각각 특별계정을 두어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 국회 보고

「방송법」 제74조에 의거 NHK는 매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이에 관한 설명서(이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독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대신에게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각 사무소에 비치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총무대신은 NHK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리하였을 경우 이를 내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각은 회계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송대학학원

일본의 방송대학학원은 방송으로 수업을 받고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교육기관이다. 사회인, 가정주부 등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대학 진학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1981년 「방송대학학원법」에 의거 설립되었다.³⁹⁾ 방송대학학원은 방송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방송을 이용한 수업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대면수업도 진행한다.

「방송대학학원법」은 2002년 전면 개정된 바 있으며, 현행법은 2023년 5월 8일 개정되어 10월 1일 시행되고 있다.⁴⁰⁾ 동법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을 방송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대학교

39)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808

육의 기회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을 위한 방송의 보급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⁴¹⁾ 방송대학학원의 업무는 방송대학의 설치와 운영, 방송대학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방송 실시,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이며, 그 외의 방송은 할 수 없다(제4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송 대학학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며(제6조), 주무장관은 방송대학학원의 재무나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를 검사할 수 있다(제12조).

방송대학학원은 1984년 11월 시험방송을 거쳐 1985년 4월 간토지역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개시하였다. 1998년에는 스카이퍼펙(Sky PerfecTV)을 통한 전국방송을 시작했다. 2011년 BS디지털 위성방송을 개시하면서 2012년 스카이퍼펙을 통한 방송은 종료하였다. 2018년에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및 FM방송도 종료하였다.

40)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51642&AST_SEQ=157

41)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51642&AST_SEQ=157

2. 민간방송 현황

1) 사업자 수

일본의 민간방송은 NHK와 방송대학학원을 제외한 방송을 말한다. 방송광고, 이용요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방송은 지상계, 위성계, 케이블TV로 나눌 수 있다. 총무성 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말 민간방송사 수는 지상계 537개사(342개 커뮤니티방송사 포함), 위성계 41개사, 케이블TV 456개사(2022년 기준)가 있다.

< 민간방송사업자 수 추이 >

年度末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상계	TV방송 (단영)	VHF	16													
		UHF	77	93	93	94	94	98	94	94	95	95	95	96	96	96
	라디오방송 (단영)	중파(AM)방송	13	13	13	14	14	14	14	14	15	15	15	16	16	16
		초단파(FM)방송	298	307	319	332	338	350	356	369	377	384	384	388	390	393
		우리커뮤니티방송	246	255	268	281	287	299	304	317	325	332	334	338	339	342
		단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V/라디오방송(겸영)		34	34	34	33	33	33	33	33	32	32	32	31	31	31
	문자방송(단영)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멀티미디어방송				1	1	1	4	4	4	6	6	2	2	0	0
소계			440	449	461	475	481	500	502	515	526	533	529	534	534	537
위성계	위성기간방송	BS방송	20	20	20	20	20	20	19	19	22	22	20	22	21	21
		동경110도CS방송	13	13	22	23	23	23	23	20	20	20	20	20	20	20
	위성일반방송		91	82	65	45	7	5	4	4	4	4	4	4	4	3
	소계			113	108	92	72	46	44	41	39	41	41	39	42	42
케이블T V	등록 관련 유선일반방송 (자주방송할 사람에 한함)	구 허가시설에 의한 방송 (자주 방송할 사람에 한함)	502	556	545	539	520	510	508	504	492	471	464	464	456	-
		구 유선서비스 이용 방송	26													
		그 중 IP멀티캐스트방송	5	5	4	3	3	3	5	5	5	5	5	4	3	-
	소계			528	556	545	539	520	510	508	504	492	471	464	464	456

1. 2015년 말 TV방송(단영) 수에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실시하고 있던 자(5자 중 1자는 지상기간방송을 겸영)를 포함
2. 위성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6월에 개정 시행된 방송법에 따라 BS방송 및 동경 110도 CS방송을 위성기간방송, 그 이외의 위성방송을 위성일반방송으로 함
3. 위성계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BS방송, 동경 110도 CS방송 및 위성 일반방송의 2이상을 겸영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란의 합계와 소계란의 수치가 일치하지는 않음. 또한, 2011년 이후는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정함.
4. 케이블TV에 대해서는, 2010년은 구 유선텔레비전 방송법에 근거하는 구 허가 시설 사업자 및 구 전기통신업무 이용 방송법에 근거하는 등록 사업자, 2011년 이후는 방송법에 근거하는 유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등록 일반 방송 사업자(또한,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구 유선업무 이용 방송의 수, 2011년 이후는 유선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자주 방송을 실시하는 등록 일반 방송사업자의 수).

※ 출처 :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 p. 12842

2) 시장규모

NHK를 포함한 일본 방송사 순매출액(Net Sales) 규모는 2022년 3조 6,845만 엔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상파방송사가 4~7%, 위성방송사가 6~9%, 케이블TV가 8~1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일본 방송산업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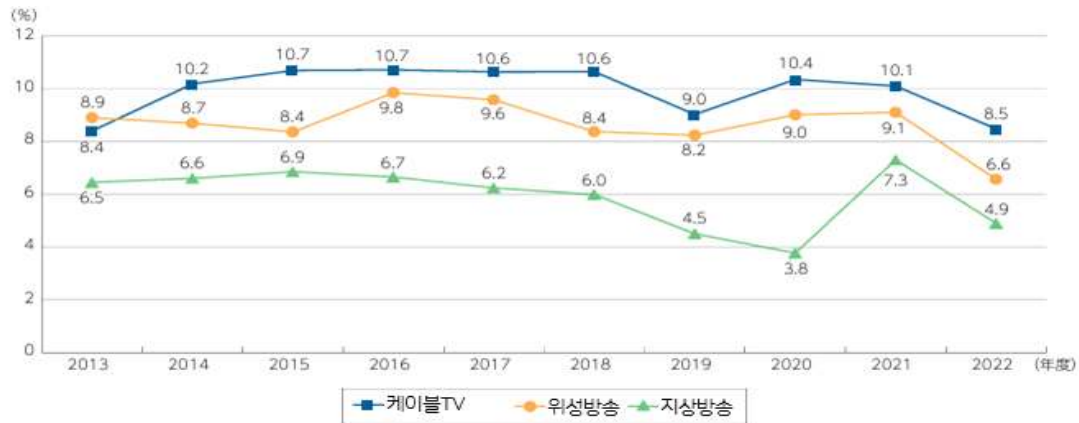


1. 위성계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과 관련된 영업수익을 대상으로 집계
 2. 케이블TV사업자는, 2010년까지는 자주 방송을 실시하는 구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의 구 허가 시설(구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등록을 받은 설비로, 해당 시설과 동등한 방송방식의 것을 포함)을 가지는 영리법인, 2011년부터는 유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자주 방송을 실시하는 등록 일반방송사업자(영리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집계(모두 IP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한 사업자 등을 제외.)
 3. NHK의 가치는, 경상사업 수입
 4. 케이블TV 등을 겸업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송사업자는 제외
- ※ 출처 :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 p. 126.⁴³⁾

42)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pdf/n2130000.pdf>

43)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pdf/n2130000.pdf>

< 민영방송사 영업이익률 추이 >



※ 출처 :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 p. 127.⁴⁴⁾

3) 가입자 수

가입자 수는 2022년 기준 케이블TV 3,161.7만, 동경 110도 CS방송(Sky Perfect) 210.8만, 동경 124/128도 CS(Sky Perfect Premium service) 70.0만, WOWOW 256만, NHK 4,447.7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 방송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



44)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pdf/n2130000.pdf>

1. 지상방송(NHK) 가입자수는 NHK의 전계약 형태의 수신계약 건수
 2. 위성 계약 등의 가입자 수는 NHK의 위성 계약 및 특별 계약의 건수
 3. WOWOW의 가입자 수는 WOWOW의 계약 건수
 4. 도케이 124/128도 CS의 가입자 수는 스카퍼! 프리미엄 서비스 계약 건수
 5. 동경 110도 CS의 가입자 수는 스카퍼! 계약 건수
 6.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입 세대수는, 등록에 관련된 자주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유선 전기 통신 설비의 가입 세대수
- ※ 출처 : 총무성(2023). 「정보통신백서」, p.130.⁴⁵⁾

4) 주요사업자

(1) 지상파방송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NHK와 달리 민간방송은 일본 「전파법」 상 지역단위로 전파사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수의 로컬방송국이 독립회사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로컬방송국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니혼테레비계열(NTV), TBS테레비계열(TBS), 후지테레비계열(CX), 테레비아사히계열(EX), 테레비도쿄계열(TX)이 대표적인 민방네트워크이다. 또한 일본은 뉴스네트워크, 방송 네트워크, 라디오 네트워크 등을 각각 구축하며, 하나의 로컬방송국이 복수의 네트워크에 가맹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방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로컬방송국을 키국이라고 한다. 관동 지역 5개 로컬방송국(니혼테레비, TBS, 후지테레비, 테레비아사히, 테레비도쿄)이 키국이다. 여기에 간사이 지역 5개 로컬방송국(요미우리테레비, 마이니치테레비, 간사이테레비, 아사히방송, 테레비오사카)을 합하여 10개 키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방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로컬방송국은 독립 로컬방송국이라고 한다.

니혼테레비(닛테레, NTV, NNN(일본 국내 뉴스네트워크)을 약칭으로 사용)는 1952년 설립된 최초의 민영방송사이다. NIPPON TV(지상파)⁴⁶⁾, BS NIPPON TV(BS위성)⁴⁷⁾, CS NIPPON TV(CS위성)⁴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니혼테레비 가맹국 현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45)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pdf/n213000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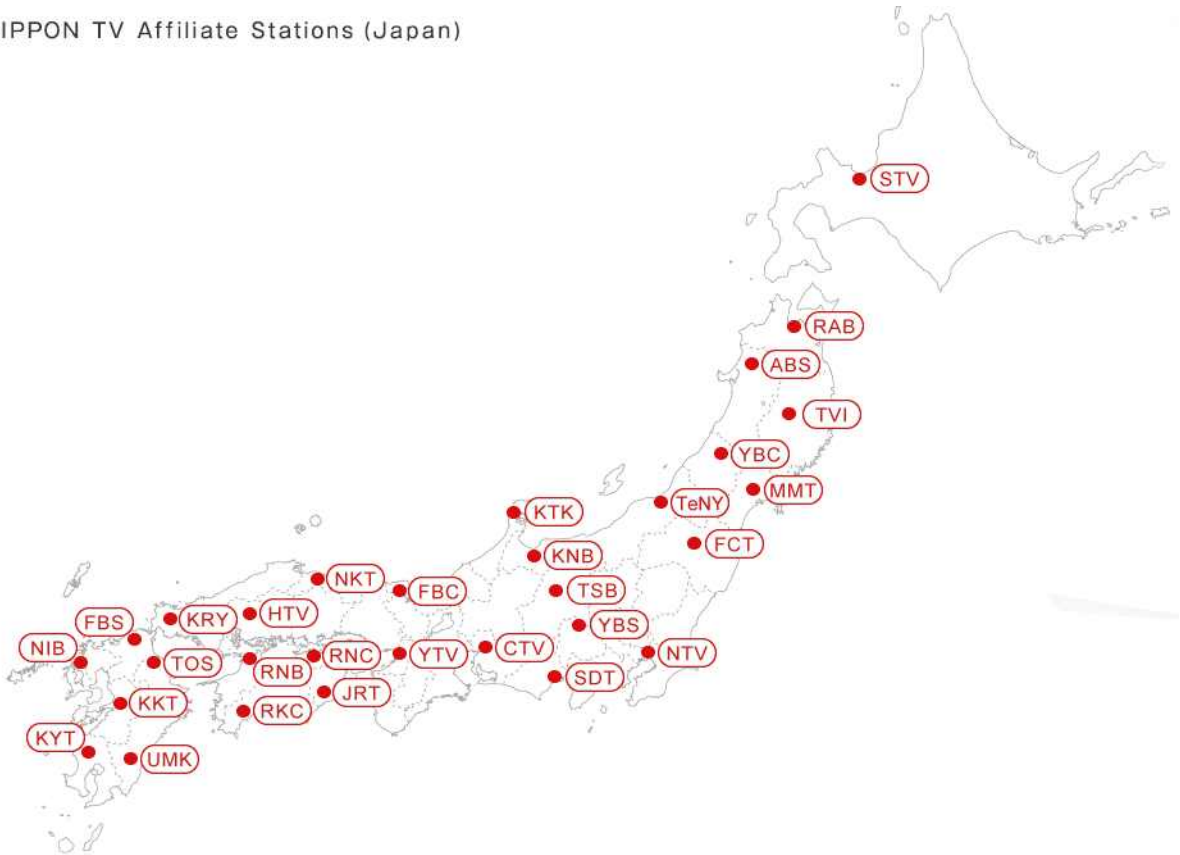
46) <https://www.ntv.co.jp/>

47) <https://www.bs4.jp/>

48) <https://www.cs-nippon.com/>

< 니혼테레비 가맹국 >

NIPPON TV Affiliate Stations (Japan)



※ 출처 : <https://www.ntv.co.jp/english/an/gn.html>

TBS는 TBS홀딩스⁴⁹⁾ 산하에 TBS 텔레비전(TBS1, TBS2, TBS NEWS⁵⁰⁾)⁵¹⁾, TBS 라디오⁵²⁾, BS-TBS⁵³⁾, TBS SPARKLE⁵⁴⁾, TBS GLOWDIA⁵⁵⁾, TBS ACT⁵⁶⁾가 있다. TBS는 캐치업 스트리밍 서비스로 TVer, TBS FREE를 운영하고 있다.⁵⁷⁾

49) <https://www.tbsholdings.co.jp/>

50) BS위성으로 방송되는 24시간 뉴스채널

51) <https://www.tbs.co.jp/>

52) <https://tbsradio.co.jp/>

53) <https://bs.tbs.co.jp/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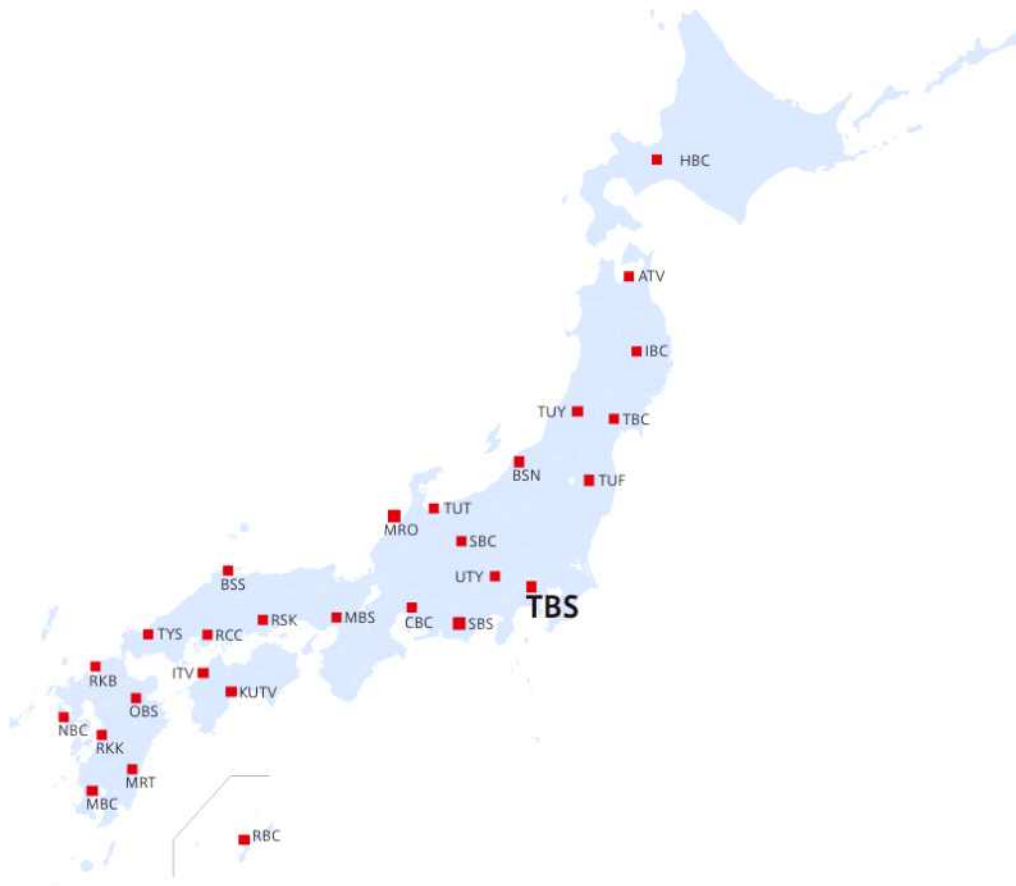
54) <https://www.tbssparkle.co.jp/>

55) <https://www.tbsglowdia.co.jp/>

56) <https://www.tbsact.co.jp/>

57) <https://www.tbsholdings.co.jp/en/pdfjs/web/highlights2024e.html>

< TBS의 JNN 네트워크(Japan News Network) >



※ 출처 : <https://www.tbsholdings.co.jp/tbstv/corporate/jnn.html>

후지테레비⁵⁸⁾는 1957년 창립되어 1959년 3월부터 방송을 개시한 일본 최대 민영방송국이다. 후지미디어 홀딩스 산하에 (주)후지테레비, (주)BS후지, (주)닛폰방송, (주)센다이방송, (주)공동텔레비전, (주)후지크리에이티브코퍼레이션, (주)후지알, (주)NEXTEP, (주)포니캐년, (주)퍼시픽뮤직, (주)DINOS CORPORATION, (주)쿼러스, (주)후소사가 있다. 이외에 도시개발·관광사업,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후지테레비는 지상파TV방송을 핵심으로 위성(BS, CS)방송, 라디오방송,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게임, 음악, 광고, 출판, 통신판매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⁵⁹⁾

58) <https://www.fujitv.co.jp/>

59) <https://www.fujimediahd.co.jp/corporate/segment.html>

< 후지테레비 국내 네트워크(FNS계열국) >



※ 출처 : <https://www.fujitv.co.jp/company/info/network.html>

테레비아사히⁶⁰⁾는 1957년 11월 설립된 민영방송사이다. 교육전문방송국으로 출발하였다가 1973년 종합프로그램국으로 변경되었다. 1977년 일본경제신문사가 소유권을 아사히신문사로 넘기면서 전국아사히방송(주)로 사명이 바뀌었다. 2000년 BS아사히를 개시하였다. 2003년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작하고 사명을 (주)TV아사히로 변경하였다.

TV도쿄는 1964년 4월 일본과학기술진흥재단TV국(통칭 도쿄12채널)의 교육전문국으로 출범하였다. 1968년 (주)도쿄12채널프로덕션, 1969년 (주)도쿄12음악출판을 설립하였다. 1973년 11월 (주)도쿄12채널(도쿄12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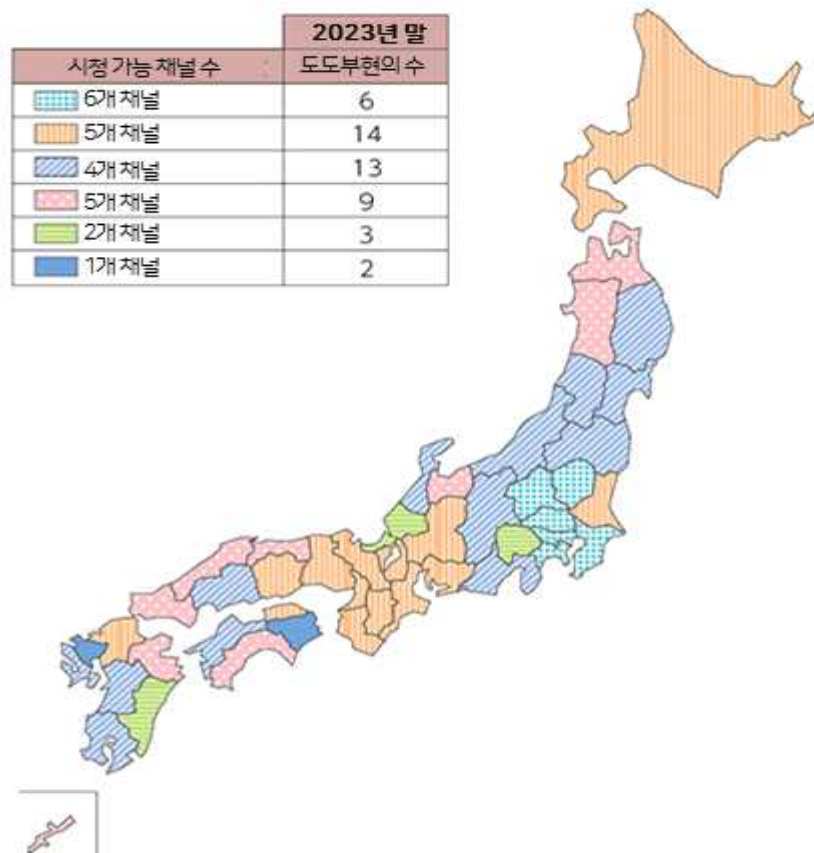
60) <https://www.tv-asahi.co.jp/>

프로덕션의 새 명칭)이 방송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일반종합방송국으로 전환되었다. 1978년 4월에는 (주)TV 도쿄 미디어넷, 9월에는 (주)텔레비도쿄커머셜을 설립했다. 1981년 (주)TV도쿄로 사명을 변경했다.

(2) 지역별 민방 지상파TV 시청가능 채널 수

2023년말 기준 일본 지역별 민간 지상파TV 시청가능 채널 현황은,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개 채널 시청가능 지역 6개, 5개 채널 시청가능 지역 14개, 3개 채널 시청가능 지역 9개, 2개 채널 시청가능 지역 3개, 1개 채널 시청가능 지역 2개이다.

< 민간 지상파TV 시청가능 채널 수(2023년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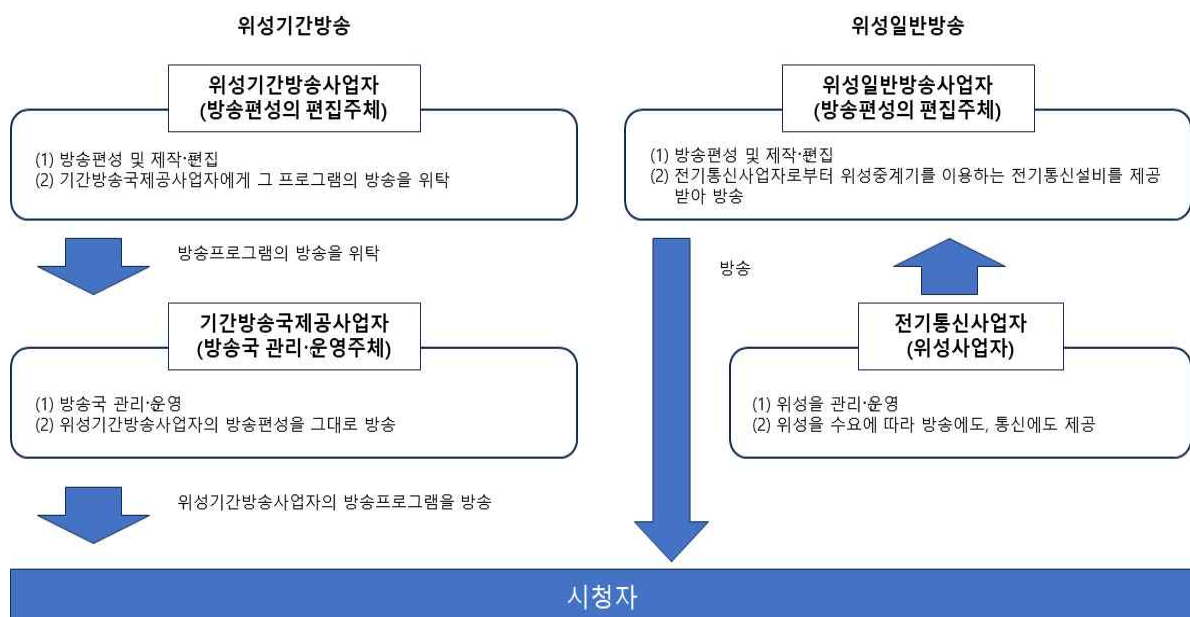
※ 출처 : 총무성 홈페이지⁶¹⁾

61)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6/html/datashu.html#f00198>

(3) 위성방송

일본의 위성방송은 위성기간방송과 위성일반방송으로 나뉜다. 위성기간방송 중 BS디지털방송은 (주)방송위성 시스템의 인공위성을 통해 NHK, 방송대학학원 및 민간방송사업자(2023년 말 기준 21개사)가 방송하고 있으며, 그중 9개사가 4K, 8K 방송을 하고 있다. 동경 110도 CS방송은 스킵아JSAT 인공위성을 통해 민간방송사(2023년 말 20개사)가 방송하고 있다. 위성일반방송의 경우, 스킵아JSAT 인공위성을 통해 민간방송사(2023년 말 기준 3개사)가 방송하고 있다.⁶²⁾

< 위성방송 제도 >



※ 출처 : 총무성(2024.4.1.) 「위성방송현황」, 9쪽.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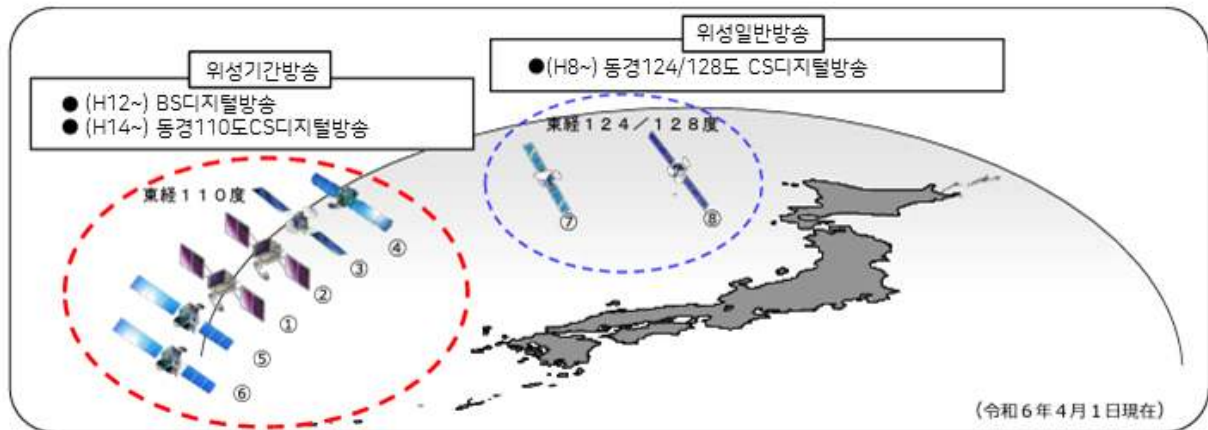
① 인공위성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인공위성은 BS디지털방송, 동경110도 CS디지털방송, 동경 124/128도 CS디지털방송이다.

62) 일본의 위성방송은 인공위성 종류에 따라 방송위성(BS, Broadcast Satellite)과 통신위성(CS, Communication Satellite)로 구분된다. 총무성은 위성 궤도 상 동경 110도에 위치하여 같은 궤도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하는 BS방송과 동경 110도 CS방송을 '위성기간방송'으로, 124/128도 CS방송을 '위성일반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63)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4620.pdf

<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주요 인공위성 현황 >



	위성명	궤도위치	국제주파수할당상의 위치	방송종별	운용개시	관리회사
①	BSAT-3a	동경110도	방송위성업무	위성기간방송	2007년 10월	(株)방송위성시스템
②	BSAT-3b	동경110도	방송위성업무	위성기간방송	2011년 7월	(株)방송위성시스템
③	BSAT-3c /JCSAT110R	동경110도	방송위성업무 고정위성업무(우주에서지구)	위성기간방송	2011년 9월	(株)방송위성시스템 스키파JSAT(주)
④	JCSAT-110A	동경110도	고정위성업무(우주에서지구)	위성기간방송	2017년 4월	스키파JSAT(주)
⑤	BSAT-4a	동경110도	방송위성업무	위성기간방송	2018년 12월	(株)방송위성시스템
⑥	BSAT-4b	동경110도	방송위성업무	위성기간방송	2020년 9월	(株)방송위성시스템
⑦	JCSAT-4B	동경124도	고정위성업무(우주에서지구)	위성일반방송	2012년 8월	스키파JSAT(주)
⑧	JCSAT-3A	동경128도	고정위성업무(우주에서지구)	위성일반방송	2007년 3월	스키파JSAT(주)

※ 출처 : 총무성(2024.4.1.) 「위성방송현황」, 3쪽⁶⁴⁾.

② 위성기간방송

BS방송 및 동경110도 CS방송은 2009년 2월 제도상 '특별위성방송'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개정된 「방송법」(2010년 법률 제65호)의 시행(2011년 6월 30일)에 따라 기간방송으로 분류되어 '위성기간방송'이 되었다.

'위성기간방송' 중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은 NHK에 의한 2개 채널 및 주식회사 WOWOW에 의한 1개 채널이 방송되었지만 2011년 7월 24일 종료되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은 현재 70개 고화질 텔레비전방송(HD) 및 12개 표준 텔레비전방송(SD)이 행해지고 있다(임시목적방송 1개 채널 제외). 2018년 12월 상용화된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4K·8K)의 경우, 현재 BS방송에서 10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동경 110도 CS

64)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4620.pdf

방송에서 8개 방송이 이뤄졌지만 2024년 3월 31일 방송을 종료했다. 텔레비전방송 이외의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초단파방송(라디오방송) 1개 채널 및 데이터방송 1개 채널이 행해지고 있다.

‘위성기간방송’ 사업주체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여 인공위성 등의 관리운용 책임을 지는 주체(기간방송국 제공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위성기간방송사업자)로 나뉘어 있다. 2008년 「방송법」 개정⁶⁵⁾에 따라 유료방송 계약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및 CAS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업무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기간방송국 제공사업자에는 주식회사 방송위성시스템, 스카파JSA 주식회사 등 2개사가 위성기간방송국의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여 무선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성기간방송사업자에는 41개 회사가 위성기간방송업무를 인정받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유료방송관리사업자는 현재 스카파JSAT주식회사 1개사로 되어 있다.

③ 위성일반방송

위성일반방송은 위성일반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위성사업자)로 나뉜다. 위성일반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을 수행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성중계기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아 방송을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위성사업자)는 위성을 관리·운용하면서 수요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위성을 제공한다.

(4) 케이블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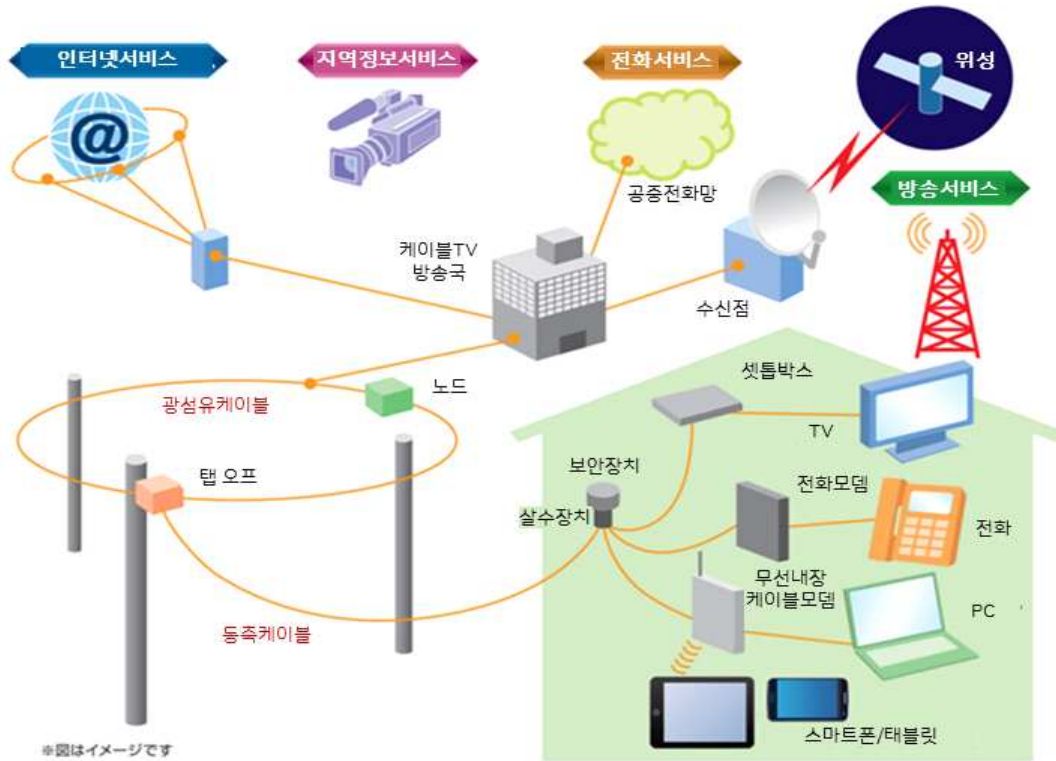
① 케이블TV 네트워크⁶⁵⁾

일본의 케이블TV는, 지상파TV방송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1955년 군마현(群馬県)의 이카호에서 공동수신 실험을 한 것이 그 시작이다. 케이블TV는 서비스 제공지역에 광섬유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부설하여, 케이블TV국의 센터와 지역 내 가정을 각각 케이블로 연결하여 방송서비스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블TV의 서비스에는 방송서비스(지상 디지털방송 재방송, BS디지털방송 재방송, 전문 다채널 CS방송, 4K·8K 위성방송, 커뮤니티방송), 통신서비스(인터넷 접속서비스, 전화서비스, 케이블 스마트폰(MVNO), 지역 BWA 서비스, 로컬 5G 서비스, IoT서비스 등)가 있다. 케이블TV는 지역밀착 사업이라는 지역성, 임기응변적 대응이 가능한 기동성, 인프라에서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수직적 종합성을 바탕으로 유·무선 모두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65) https://www.catv-jcta.jp/p/service/broadcast.html#block_02

< 케이블TV 네트워크 구성도 >



※ 출처 : <https://www.catv-jcta.jp/p/service/cabletv.html>

② 케이블TV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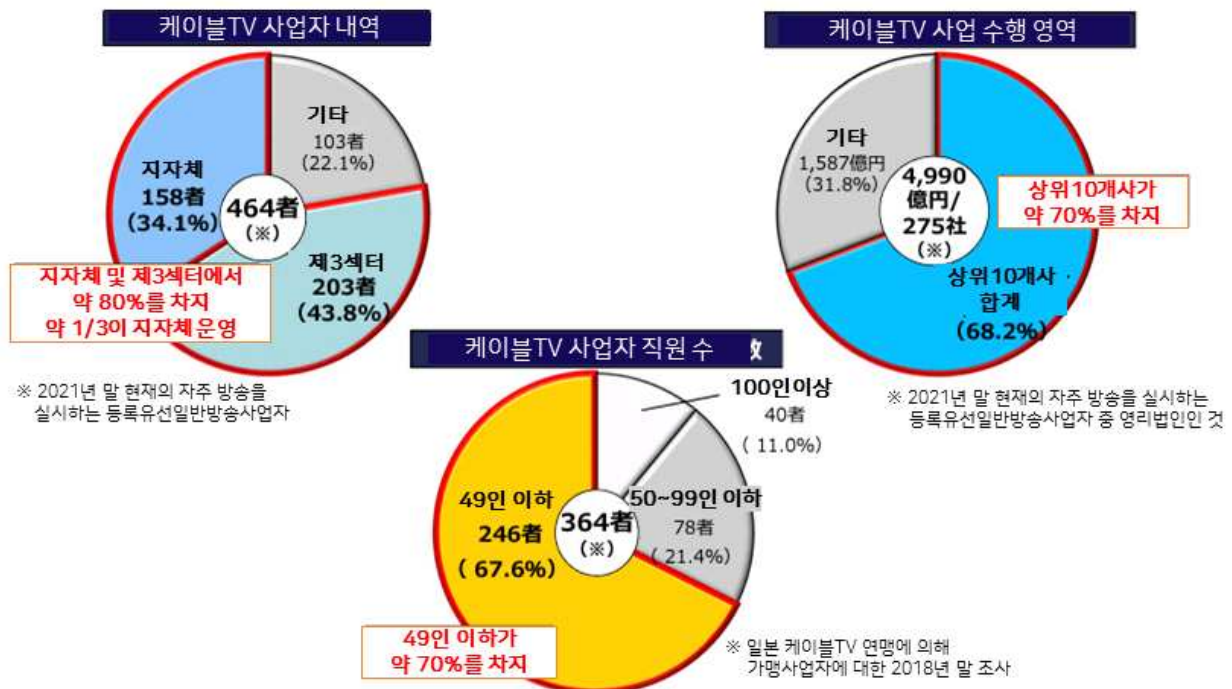
일본케이블TV연맹의 <케이블TV현황>(2024.9.10.)⁶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케이블TV 사업자 수는 464개 사, 가입세대 수는 3,139만 가구, 가구보급률은 52.5%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케이블TV연맹(JCTA) 회원사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 수는 348개사(전체 사업자 중 약 75%), 가입세대 수는 2,772만(세대보급률 46.4%), 인터넷접속 가입세대 수는 1,032만, 다채널 서비스 가입세대 수는 782만, 전화서비스 가입세대 수는 876만대, 사업매출은 1조 3,788억 엔으로 집계되고 있다. 케이블TV는 일본 전체 가구 수 5,976만 중 5,280만 가구를 커버하고 있고(커버율 88.4%),⁶⁷⁾ 2,772만 가구(46.4%)가 케이블망에 접속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춰 케이블TV는 도서, 산간 등을 포함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6)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7012.pdf

67) 케이블TV를 신청하면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 가구의 수

총 464개⁶⁸⁾ 케이블TV 사업자 중 자치체(自治体) 158개사(34.1%), 제3섹터 203개사, 기타 103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종사자 수는 364개 사⁶⁹⁾ 기준 49인 이하가 246개 사(67.6%), 50~99인 이하가 78개사(21.4%), 100명 이상이 40개 사(11.0%)로 집계되고 있다. 매출액은 275개 사⁷⁰⁾ 4,990억 엔 기준 상위 10개사가 3,403억 엔(68.2%), 기타가 587억 엔(31.8%)를 차지하여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케이블TV 사업자 사업규모 >



※ 출처 : 일본케이블TV연맹(2024.9.10.). <ケーブルテレビの現状>, 2쪽.⁷¹⁾

케이블TV사업자의 10년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케이블TV사업은 정체상태이나 전기통신사업이 성장하여 전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일정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약 90%가 흑자를 거두고 있다.

68) 2021년말 기준 자주방송을 하는 등록유선일반방송사업자

69) 2018년 말 일본케이블TV연맹에 가맹한 사업자 기준

70) 2021년 말 기준 자주방송을 하는 등록유선일반방송사업자 중 영리법인인 자

71)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7012.pdf

< 케이블TV 경영현황 >



※ 출처 : 총무성(2024.9.10.). <케이블テレビの現状>, 3쪽.72)

③ 케이블TV 서비스73)

❖ 방송서비스

지상 디지털방송 재방송

일본에서는 2011년 7월 24일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으로의 이뤄졌다(도호쿠 피해지역 3개현 제외). 2012년 3월에는 도호쿠 피해지역 3개현에서도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환이 완료되었다. 이에 전국의 케이블TV에서는 지상 디지털방송의 재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다채널서비스(BS, CS)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국가의 적극적인 콘텐츠 정책 추진에 따라 위성을 이용한 전국서비스가 도입되었다. 현재 BS디지털방송, CS디지털방송은 지상파방송에서 볼 수 없는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

72)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7012.pdf

73) https://www.catv-jcta.jp/p/service/broadcast.html#block_02

업자가 사업에 참가하여 다채널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케이블TV는 영화, 스포츠, 뉴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하는 전문채널을 30개~50개의 기본 패키지를 구성하여 가입자에게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한다.

4K·8K 서비스

2018년 12월 1일 4K·8K 위성방송이 시작되었다. 케이블TV도 4K·8K 위성방송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케이블TV는 2015년 12월부터 방송을 개시한 일본 최초 4K 방송채널 <케이블 4K>를 2023년 12월 <satonaka 4K>, <satonaka TV>로 개편하였다. 2023년 12월 전국 80개 사에 방송되고 있으며, 시청가능 STB 대수는 전국적으로 약 243만 대이다. 'satonaka'는 2015년부터 3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케이블TV 공통 플랫폼, 올 재팬 케이블채널'을 비전으로 매일 24시간 방송되는 케이블TV의 지역정보 채널이다.

☞ 통신서비스

케이블TV는 유선통신 서비스로 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 그리고 무선통신 서비스로 케이블 스마트폰(MVNO), 지역 BWA(Broadband Wireless Access) 서비스, 로컬 5G 서비스, Io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정보서비스

케이블TV는 커뮤니티방송, 긴급지진속보,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커뮤니티방송은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제작·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이다. 지역의 행정정보를 시작으로 교통정보, 방재정보, 재해정보, 현지 쇼핑정보 등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긴급지진속보는 일본 기상청이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예보와 경보이다. 긴급지진속보에는 '일반용'과 '고도 이용자용'의 두 종류가 있다. 케이블TV는 가정이나 사업소에 설치된 전용 단말로 고도 이용자 전용 긴급지진속보를 제공하여 지진의 규모나 지진 도달시간 등을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방송서비스는 커뮤니티방송의 채널에 맞추어 "d" 버튼을 누름으로써 지상파 디지털방송 대응 TV화면에서 정지화면정보나 문자정보를 간단한 리모콘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청촌(市町村) 등의 행정정보·시설소개, 경찰서·소방서로부터의 공지, 휴일 당번의 소개, 매일의 교통정보·일기예보, 현지가게 소개, 외출정보, 케이블TV로부터의 공지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요 방송정책

1) 기간방송보급계획 및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총무성은 「방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방송보급기본계획>을 작성·수립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총무성은 방송대상지역과 설립될 방송국 숫자, 방송프로그램 수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전파를 할당한다. <기간방송보급계획>(총무성 고시 제405호, 2023년 12월 1일 시행)⁷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방송보급계획 >

제1. 기간방송의 계획적인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일본 기간방송은 전국적 보급을 의무화하는 일본방송협회(이하, 협회), 「방송대학학원법」(2002년 법률 제156호)에 따른 방송대학학원(이하, 학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간방송을 실시하는 협회 및 학원 이외의 기간방송사업자(이하, 민간기간방송사업자)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 기간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 보급되어 그 효용을 가져오는 동시에 민주주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발달, 수요동향, 지역 사정 등을 감안하는 한편 각종 방송미디어의 특성과 협회, 학원 및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특질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또한 기간방송에 의한 정보의 다원적 제공 및 지역성 확보, 지역 간 기간방송 보급 균형을 적절히 배려하면서 기간방송의 계획적인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침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1. 기간방송을 최대한 보급하기 위한 지침

(1) 국내방송 보급

가. 지상기간방송

지상기간방송에 대해서는 지상기간방송국(지상기간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해당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74) https://www.tele.soumu.go.jp/horei/law_honbun/00004680.html#shoshi-inf-span

(가) 중파방송

협회의 방송에 대해서는 종합방송 및 교육방송 각 1계통의 방송, 민간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계통의 방송이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2계통 이상의 방송이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나) 단파방송

단파방송에 대해서는 1계통의 방송을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다) 초단파방송

협회의 방송에 대해서는 종합방송 1계통의 방송, 현역(県域)방송을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1계통의 방송을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단, 전국 주요지역에서 현역방송을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2계통의 방송이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커뮤니티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에 관한 수요동향, 주파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업, 업무,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구역, 스포트 레크리에이션 교양 문화 활동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이 정비된 구역 등 커뮤니티방송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서 그 보급을 도모한다.

(라) 텔레비전방송

협회의 방송에 대해서는 종합방송 및 교육방송 각 1계통의 방송, 민간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방송 4계통의 방송을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단,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5계통 이상의 방송을 각 주요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마) 다중방송

다중방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중방송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가능한 한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나. 위성기간방송

(가) 협회의 위성기간방송

A. 협회의 방송에 대해서는 다음의 (A) 및 (B)에 제시하는 위성기간방송(방송위성업무용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실시한다.

(A) 고화질 텔레비전방송(高精細度テレビジョン放送)(일부 시간대에 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과 동시에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표준 텔레비전 방송 또는 복수의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다)

(B)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超高精細度テレビジョン放送)

B. A의 방송에 대해서는 수도직하형 지진등(首都直下型地震等)에 의해 지상기간방송의 전국방송 실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성기간방송의 특성을 살려 전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C. A(A)의 방송에 대해서는 그 주파수(우선원편파의 전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1의 범위 내에서, 위성기간방송의 광역성, 경제성, 대용량성 및 고품질성을 살린 정보의 제공을 실시한다. 동시에 외부사업자의 기획·제작 능력을 방송프로그램에 활용해, 과거의 뛰어난 문화보존과 새로운 문화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계통 종합방송을 실시한다.
- D. A(A)의 방송에 대해서는 다양화고도화하는 공중의 수요를 근거로 디지털기술의 새로운 이용방법의 개발 또는 보급에 임한다.
- E. A(A)의 방송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총 방송시간(뉴스프로그램 및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이하 동일) 중 협회가 일부 외주제작사업자(국내외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을 하는 자, 협회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는 제외, 이하 동일)에 제작을 위탁한 방송프로그램(협회의 자회사 또는 관련회사를 통해 제작을 위탁한 것을 포함하며, 협회에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협회와 외주제작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예약구입방식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 F. A(B)의 방송에 대해서는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보급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A) 및 (B)에 제시하는 각 1계통의 방송을 각각의 방송의 특성을 살려 실시한다.
 - (A) 그 주파수(우선원편파의 전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1/3 범위 내에서 외부사업자의 기획·제작 능력을 방송프로그램에 활용해 실시하는 종합방송
 - (B) 그 주파수(좌선원편파의 전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1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종합방송
- G. F(A)의 방송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총 방송시간 중 협회가 외부 제작사업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방송프로그램(협회의 자회사 또는 관련회사를 통해 제작을 위탁한 것을 포함해, 협회에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다) 협회와 외부 제작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예약구입방식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H. A(B)의 방송에 대해서는 다음의 (A) 및 (B)에 제시하는 사항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 (A) D에서 정하는 사항
 - (B) 좌선원편파의 전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과 관련된 수신환경의 정비를 배려하는 것
- I. F(B)의 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대에 있어서 복수의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 J. 좌선원편파의 전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과 관련된 수신환경이 일정정도 정비되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이 보급된 단계에서, 협회의 위성기간방송과 관련된 방송계에 의해 방송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학원의 위성기간방송

학원의 위성기간방송에 대해서는 1계통의 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과 동시에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다) 및 1계통의 초단파 방송에 의한 대학교육방송을 실시하는 것.

(다)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위성기간방송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위성기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술동향을 바탕으로 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및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위성기간방송에 의한 초고화질 텔레비전 이외의 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전체적으로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이 확보되도록 배려한다.

다.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의 보급

민간기간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 및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국 각 지역에서 두루 수신할 수 있을 것

(나) 수신 설비 보급을 배려할 것

(다) 자동차, 기타 육상을 이동하는 것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휴대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신설비에 의해 수신되는 특성을 살린 서비스의 추진을 충분히 배려할 것

덧붙여 민간기간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서는 영상, 음향, 신호 등의 정보 및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축적형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린 서비스의 추진에 충분히 배려한다.

(2) 내외방송 보급(内外放送の普及)

내외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그 보급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제방송의 보급

국제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게 한다.

(4) 기타 방송의 다양화, 고도화 등을 위한 시책

가. 향후 다양화, 고도화하는 방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 기존 방송의 보급촉진, 수신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간방송용 주파수의 유효 활용, 수신 장애 대책 등에 관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조기 실용화를 도모한다.

다. 지상기간방송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초단파방송에 대해서는 장래의 실용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정 등을 감안한 후 시험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외에 방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파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방송 또는 일시의 목적을 위한 방송을 적시에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간방송국의 기지국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한다.

2. 기간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자가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한 많은 자에 의해 향유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

- (1) 지상기간방송을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에 의한 지상기간방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는 방송계의 수를 제한하고, 또한 커뮤니티방송에 대해서는 공중선 전력의 값을 최소한의 것으로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지상기간방송을 실시할 기회를 개방한다.
- (2) 위성기간방송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거나 지배되는 위성기간방송의 업무와 관련된 전송용량을 제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 대해 위성기간방송을 실시할 기회를 개방한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의한 고화질화 및 동일 주파수대에서 방송가능한 프로그램 수의 증대와, 그것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려한다.
- (3)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거나 지배되는 이동수신용 기간방송 업무 관련 전송용량을 제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행하는 기회를 개방한다. 또한,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의 실현에 충분히 배려한다.
- (4) 각 지역사회에서 대중정보 제공수단의 소유 및 지배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3. 기타 기간방송의 계획적인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사항

기간방송을 실시하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에 의한 기간방송(전국방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구성 및 운영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그 기간방송을 통한 지역주민 요망에 부응함으로써, 기간방송에 관한 해당 지역사회의 요망을 충족한다.

제2. 「방송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간방송보급계획에 적합할 것」에서의 적합(특정기간방송사업자의 경우, 「전파법」 제7조 제2항 제4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간방송보급계획에 적합할 것」에서의 적합)

(생략)

제3. 기간방송의 구분별 방송대상지역 및 방송대상지역별 방송계의 수(위성기간방송 및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수) 목표

1. 총칙

(1) 이하 규정에 관해서는 전파 및 방송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 외에 다음 정의에 따른다.

- 가. 「관동광역권(関東広域圏)」이란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및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나. 「나카교광역권(中京広域圏)」이란 기후현(岐阜県), 아이치현(愛知県) 및 미에현(三重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다. 「긴키광역권(近畿広域圏)」이란 시가현(滋賀県),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나라현(奈良県) 및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라. 「도호쿠광역권(東北広域圏)」이란 아오모리현(青森県),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아키타현(秋田県), 야마가타현(山形県) 및 후쿠시마현(福島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마. 「간토·고신에츠광역권(関東・甲信越広域圏)」이란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니가타현(新潟県), 야마나시현(山梨県) 및 나가노현(長野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바. 「도카이·호쿠리쿠광역권(東海・北陸広域圏)」이란 도야마현(富山県), 이시카와현(石川県), 후쿠이현(福井県), 기후현(岐阜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및 미에현(三重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사. 「주고쿠·시코쿠광역권(中国・四国広域圏)」이란 돗토리현(鳥取県), 시마네현(島根県), 오카야마현(岡山県), 히로시마현(広島県), 야마구치현(山口県), 도쿠시마현(徳島県), 가가와현(香川県), 에히메현(愛媛県) 및 고치현(高知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 아. 「규슈·오키나와광역권(九州・沖縄広域圏)」이란 후쿠오카현(福岡県), 사가현(佐賀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구마모토현(熊本県), 오이타현(大分県), 미야자키현(宮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및 오키나와현(沖縄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2) 기간방송의 구분마다 방송대상 지역 및 방송대상 지역마다의 방송계수 수의 목표는 (3)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2.에 정하는 대로 한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방송의 필요성, 주파수 사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간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커뮤니티방송

나. 데이터방송

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목적을 위한 방송

라. 시험방송

마. 위성기간방송(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방송은 제외한다)

(가) 협회 또는 학원의 위성기간방송

(나) 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다)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바. 협회가 실시하는 국제방송 및 중계국제방송

2. 국내방송에 관한 기간방송의 구분마다 방송대상지역 및 방송대상지역마다 방송계 수의 목표

(1) 지상기간방송(디지털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텔레 비전 방송 (유료 방송 제외)	고화질 텔레비 전방송 을 포함한 방송	협회 방송	종합 방송	광역 방송	관동광역권	1
				현역 방송	관동광역권에 속하는 현을 제외한 도부현의 각 구역(注)	방송대상지역 당 1
			교육방송	전국	1	
		민간 기간 방송 사업 자의 방송	종합 방송	광역 방송	관동광역권	5
					나카교광역권 및 긴키광역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4
				현역 방송	홋카이도 및 후쿠오카현의 각 구역 및 오카야마현 및 가가와현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5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야마가타현(山形県), 후쿠시마현(福島 県), 니가타현(新潟県), 이시카와현(石川県), 나가노현(長野県), 시즈오카현(静岡 県), 히로시마현(広島県), 헤이메현(愛媛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구마모토 현(熊本県) 및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4
					아오모리현(青森県), 아키타현(秋田県), 도야마현(富山県), 야마구치현(山口 県), 고치현(高知県), 오이타현(大分県) 및 오키나와현(沖縄県)의 각 구역 및 돗토리현(鳥取県) 및 시마네현(島根県)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3
					후쿠이현(福井県), 아마나시현(山梨県) 및 미야자키현(宮崎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2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 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기후현(岐阜県), 아이치현 (愛知県), 미에현(三重県), 시가현(滋賀県),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 (大阪府), 효고현(兵庫県), 나라현(奈良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도쿠 시마현(徳島県) 및 사가현(佐賀県)의 각 지역	방송대상지역 당 1

(注) 협회가 실시하는 종합방송의 관동광역권에는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및 군마현(群馬県)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지상기간방송(디지털방송 이외의 방송)

가. 중파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협회방송	종합 방송	광역 방송	관동광역권(関東広域圏), 나카교광역권(中京広域圏) 및 긴키광역권(近畿広域圏)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현역 방송	관동광역권(関東広域圏), 나카교광역권(中京広域圏) 및 긴키광역권(近畿広域圏)에 속하는 현을 제외한 도현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교육방송		전국	1
민간기간방송 사업자의 방송 (유료방송 제외)	광역방송		간토광역권(関東広域圏) 및 긴키광역권(近畿広域圏)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나카교광역권(中京広域圏)	2
	현역방송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오카현(福岡県) 및 오키나와현(沖縄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2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県), 아이치현(愛知県), 미에현(三重県), 오사카부(大阪府), 나라현(奈良県), 후쿠오카현(福岡県) 및 오키나와현(沖縄県)을 제외한 부현의 각 구역(시가현(滋賀県), 교토부(京都府), 돗토리현(鳥取県), 시마네현(島根県), 사가현(佐賀県), 나가사키현(長崎県)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현의 구역을 합친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나. 단파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유료방송 제외)	전국	1

다. 초단파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협회방송	종합방송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민간기간방송사 업자의 방송 (유료방송 제외)	현역방송	홋카이도(北海道)、도쿄도(東京都)、니가타현(新潟県)、아이치현(愛知県)、오사카부(大阪府) 및 후쿠오카현(福岡県)의 각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2
		이바라키현(茨城県)、니가타현(新潟県)、아이치현(愛知県)、오사카부(大阪府) 및 후쿠오카현(福岡県)을 제외한 부현의 각 구역(돗토리현(鳥取県) 및 시마네현(島根県)에 대해서는 양 현의 구역을 합친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외국어방송	도쿄도(東京都)의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 나고야시(名古屋市)、오사카시(大阪市) 및 후쿠오카시(福岡市)를 각각 중심으로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총무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방송대상지역 당 1

라. 다중방송

(가) 초단파음성다중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유료방송 제외)	협회 또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 초단파방송의 방송대상 지역과 동일	초단파방송 1계통 당 1

(나) 초단파문자다중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 수 목표 (放送系の数の目標)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	유료방송 제외	협회의 초단파방송 또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초단파방송의 방송대상지역과 동일
	유료방송 실시에 한정	협회의 초단파방송 또는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초단파방송의 방송대상지역과 동일
		초단파방송 1계통 당 1 이상

(3) 위성기간방송

가. 협회 위성기간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종합방송 전국	2(注1)(注2)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이외의 텔레비전 방송	종합방송 전국	1

(注1) 우회전편파의 주파수와 좌회전편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각각 1프로그램의 방송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注2) 우회전편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서는 1의 주파수를 3분할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방송프로그램 수로 하고, 좌회전편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서는 1의 주파수를 분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의 방송프로그램 수로 한다.

나. 학원 위성기간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
초단파방송	대학교육방송 전국	1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이외의 텔레비전 방송	대학교육방송 전국	1

다. 민간 기간방송사업자의 위성기간방송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전국	24정도(程度)(注1)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이외의 텔레비전 방송	전국	39정도~79정도(程度)(注2)

(注1) 1의 주파수를, 방송위성업무용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기간방송의 경우 2분할, 방송위성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

기간방송의 경우 3분할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 다만, 구체적인 기간방송업무의 인정에 있어서는 향후 디지털기술의 진전 및 해당 방송에서 필요한 음성품질, 화상품질 등을 감안하고, 그 이외의 분할방법에 의한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
(注2) 1의 주파수를 2분할, 3분할 또는 4분할하여 이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수. 다만, 구체적인 기간방송업무의 인정에 있어서는 향후 디지털 기술의 진전 및 해당 방송에 필요한 음성품질, 화상품질 등을 감안하고, 이외의 분할방법에 의한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

(4)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표준 텔레비전 방송 중 디지털 방송에 관한 송신 표준방식)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	멀티미디어방송	광역방송	긴키광역권(近畿広域圏), 도호쿠광역권(東北広域圏), 관동·고신에츠광역권(関東・甲信越広域圏), 도카이·호쿠리쿠광역권(東海・北陸広域圏), 주고쿠·시코쿠광역권(中国・四国広域圏), 규슈·오키나와광역권(九州・沖縄広域圏)	방송대상지역마다 3~5정도(程度)(注)
		현역방송	홋카이도(北海道)	3~5정도(程度)(注)

(5)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디지털방송의 표준방식)

기간방송구역		방송대상지역	방송계에 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의 목표
민간기간방송사업자의 방송	멀티미디어방송	전국	1정도(程度)(注1)
	텔레비전 방송	전국	7~20정도(程度)(注2)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방송법」 제91조 등). 2011년 6월 개정 「방송법」(2010년 법률 제65호) 시행에 따라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기본적 사항이 법정 의무가 되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특례나 지배관계 기준의 구체적 비율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위임을 받은 「총무성령」(기간방송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 임원 및 지배관계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의 특례에 관한 성령, 2015년 총무성령 제26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75) <https://www.tele.soumu.go.jp/j/sys/media/>

<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주요내용 >

1. 원칙 등

(1) 기간방송업무의 인정에 있어서 기간방송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방송법」 제93조 제1항 제5호)

가. 기간방송사업자

나. 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갖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자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갖고 있는 자

※ 특정 지상기간방송국의 면허심사에 대해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전파법」 제7조 제2항 제4호)

※ 인정방송지주회사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기간방송사업자를 관계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방송법」 제162조 제1항에 의거 제93조 제1항 제5호 대체)

(2) 「지배관계」의 기준(「방송법」 제2조 제32호 등)

① 의결권 보유

• 지상기간방송사업자

○ 1개 국(신청국) : 10분의 1 초과

○ 2개 국 이상 :

가.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10분의 1 초과

나.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3분의 1 초과

※ 인정방송지주회사가 지상기간방송사업자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방송대상지역 여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분의 1 초과

• 기간위성방송사업자 : 3분의 1 초과

• 이동수신용지상기간방송사업자 : 3분의 1 초과

② 임원의 겸임

•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상근임원의 겸임

•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정 임원(「방송법」 제2조 제31호)의 겸임

③ 유지의무(「방송법」 제1104호, 「전파법」 제76조 제4항)

• 인정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규정(「방송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총무대신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방송법」 제104조)

• 특정기간방송국의 면허인에 대하여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규정(「전파법」 제7조 제2항 제4호 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총무대신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전파법」 제76조 제4항)

II. 주요 특례

(1) 지상기간방송사업자의 특례

지상기간방송에 대해서는, 특례로서 이하의 범위 내라면 겸영·지배가 허용된다.

- 텔레비전 9국 및 라디오방송(커뮤니티 방송 제외) 9국
- 텔레비전 9국 및 커뮤니티방송 9 도도부현분(都道府県分)
 - ※ 동일 방송대상지역에서 겸영·지배 가능 범위는 텔레비전 1국, 라디오방송(커뮤니티방송 제외)은 4국임

(2) 위성기간방송사업자 특례

위성기간방송 특례로서 주파수 합계가 4 이내라면 겸영·지배가 인정된다. 단, 지상기간방송 그룹의 경우 이와 더불어,

- BS방송에 대해서는 1/2 이상의 의결권 보유는 불가
- 동경 110도 CS방송에 대해서는 2주파수를 넘는 겸영·지배는 불가

요약하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은 동종매체 간 겸영규제 측면에서 동일지역 내 복수국 지배금지(원칙적으로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송국을 지배하지 못함), 이종매체 간 겸영규제 측면에서 3사업 지배금지(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신문, 방송, 라디오의 3개 사업을 지배하지 못함)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1개 방송사업자가 지배 가능한 방송국 수는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된다. 이때 지배란 1개 지상파방송사가 1개국에 대하여 1/10 초과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2개 국 이상에서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1/10을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경우 1/3 초과하여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위성방송의 경우 신청자 등이 보유 가능한 트랜스폰더(transponder) 수에 상한을 두는 형태로 적용된다. 여기서 신청자 등이란 신청자, 신청자를 지배하는 자, 신청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 신청자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를 말한다. 지배 기준은 의결권의 1/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1/5(경영기반강화계획 인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1/3 초과)의 특정 임원 수를 겸무하는 경우, 대표권을 갖는 임원 또는 상근임원(감사 등 제외)을 겸무하는 경우이다.⁷⁶⁾ 트랜스폰더 수 상한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S와 110CS를 4 트랜스폰더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BS의 의결권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방송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0.5 트랜스폰더까지 지배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110CS에 채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2 트랜스폰더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반면 일반위성방송은 적용받지 않는다.

76) 위성방송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추가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보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방송발전을 명분 삼아 지상파방송에 비하여 한결 완화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 위성방송 분야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

신청자	구분	위성기간방송		위성일반방송
		BS방송	동경110도 CS방송	
「지상기간방송사업자등(※1)」 이외의 경우		4 트랜스폰더 (※2)		위성일반방송은 대중매체집중 배제원칙 미적용
「지상기간방송사업자등(※1)」의 경우		x (※3, ※4)	2 트랜스폰더	

※1 지상기간방송사업자, 지상기간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자, 지상기간방송사업에 의해 지배되는 자, 지상기간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

※2 HD-SD 채널과 4K-8K 채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HD-SD 채널에 대해 4 트랜스폰더, 4K-8K 프로그램에 대해 4 트랜스폰더까지 지배 가능

※3 2분의1 이하의 의결권 보유 가능

※4 인정방송지주회사의 관계회사의 경우 HD-SD 프로그램에 대해 0.5 트랜스폰더, 4K-8K 채널에 대해 0.5 트랜스폰더까지 지배 가능

※5 NHK 및 방송대학학원을 신청자로 하는 신청의 경우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각 호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출처 : 총무성(2024.4.1.) 「위성방송현황」, p. 17.77)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하여, 일본은 2005년 10월 「전파법」 및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국에 관한 외자규제의 간접출자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전파법」 및 「방송법」은 방송국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규제를 직접출자로 제한하여 왔다. 개정 전의 「전파법」 제5조와 제75조는 지상파방송 의결권의 1/5 이상을 외국인 법인이 보유하게 될 경우 방송면허 취소를 규정했다. 이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었다. 이에 총무성은 국민적 재산인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고 전파의 희소성이 있다는 점, 정치·문화·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기관이라는 점, 재해정보 등을 비롯하여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외국인 소유에 대해 간접출자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일본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간접출자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규제는 직접출자비율과 간접출자비율을 계산해 외국인이 의결권의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⁷⁸⁾

3) 방송사업자 (재)허가·인정 정책

(1) 지상파방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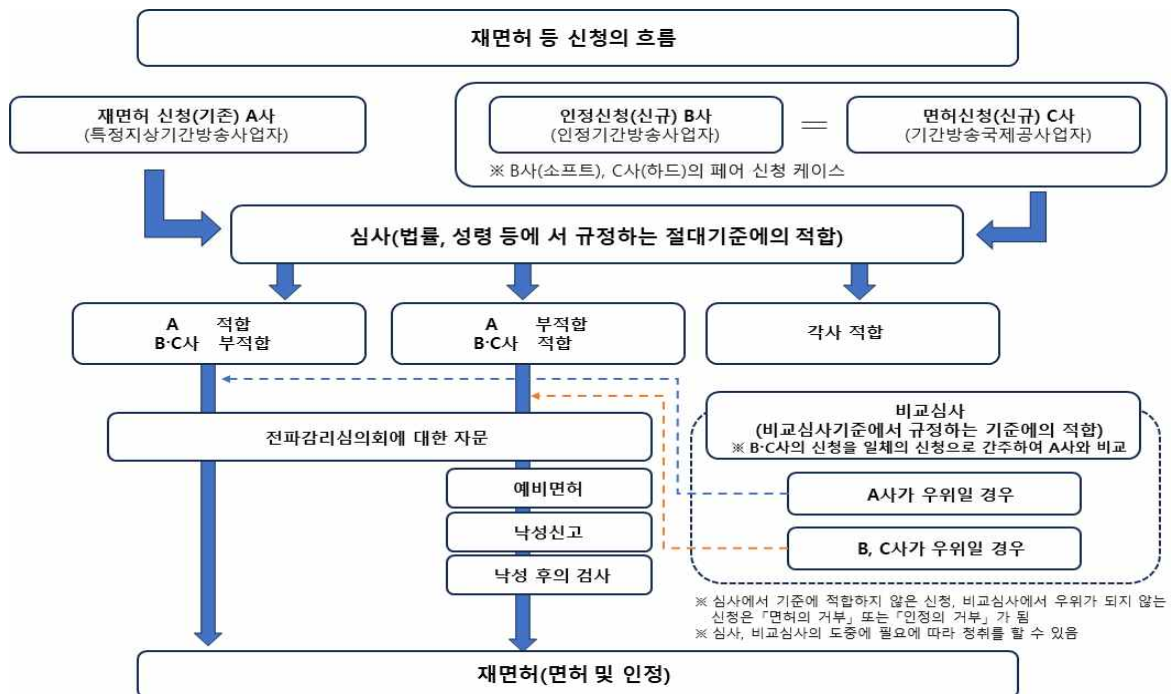
중파방송, 단파방송,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 및 초단파다중방송 등 지상기간방송(커뮤니티방송, 임시 일시적 목적을 위한 방송, 수신장애 대책 중계방송 제외)을 행하는 지상기간방송국은 총무성의 (재)면허 및 인증

77)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4620.pdf

78) 전범수 외(2008). 「이종매체 간 소유 및 겸영규제 제도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58-61쪽.

을 받아야 한다. 지상기간방송국의 면허 및 지상기간방송의 업무 인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3년 기준 신청부터 재면허에 이르는 흐름은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 지상기간방송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면허·인정 >



※ 출처: 총무성(2023.4) 「지상기간방송국 재면허등신청매뉴얼」, p. 5.79)

지상기간방송국에 대하여, 기간방송업무에 이용하는 무선국의 설치·운용(하드)과 방송업무(소프트)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이 무선국의 '면허'와 방송업무의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전파법」(1950년 법률 제 131호) 제6조 제8항에 따라 기간방송국은 총무대신의 공시(2012년 총무성 고시 제426호)하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면허 신청은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면허 신청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전파감리위원회 규칙 제14호) 제6조의4에 의거 아래 (1)~(5)에 해당하는 지상기간방송국은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재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 (1) 일본방송협회의 기간방송국으로 다른 기간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방송 이외의 것
- (2) 수신 장애 대책 중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 (3) 다중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 (4) 임시목적 방송만을 행하는 기간방송국

79)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4672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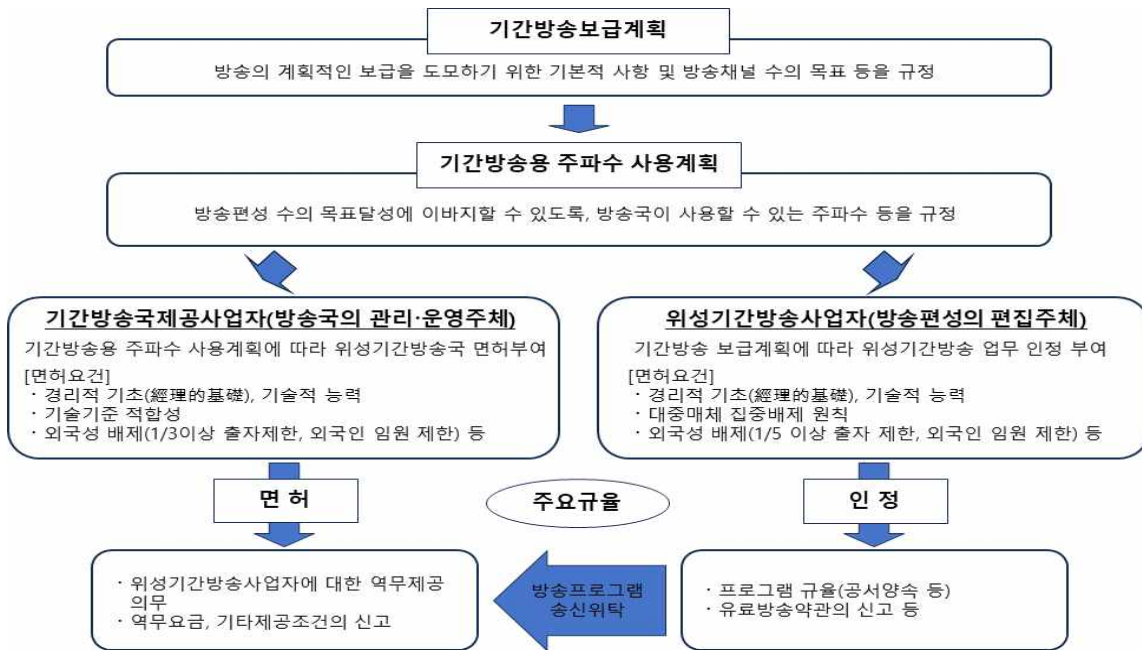
(5) 동일인에 속하는 다른 기간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중계만 하는 방송

지상기간방송국의 (재)면허 신청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지상기간방송 업무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심사를 실시한다.

(2) 위성방송사⁸⁰⁾

총무성은 방송의 계획적인 보급을 위한 <기간방송보급계획>⁸¹⁾과 <기간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간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따라 방송국을 관리·운영하는 기간방송국제공사업자에게 위성기간방송국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조건은 경리적 기초, 기술적 능력, 기술기준 적합성, 외국인 배제(1/3 이상 출자 제한, 외국인 임원 제한) 등이다. 또한 '기간방송보급계획'에 따라 방송편성의 편집주체인 위성기간방송사업자에게 위성기간방송 업무인정을 부여한다. 면허조건은 경리적 기초, 기술적 능력, 대중매체 집중배제 원칙, 외국성 배제(1/5 이상 출자 제한, 외국인 임원 제한) 등이다.

< 위성기간방송에서 위성방송사업자 면허인정 >



※ 출처 : 총무성(2024.4.1.) 「위성방송현황」,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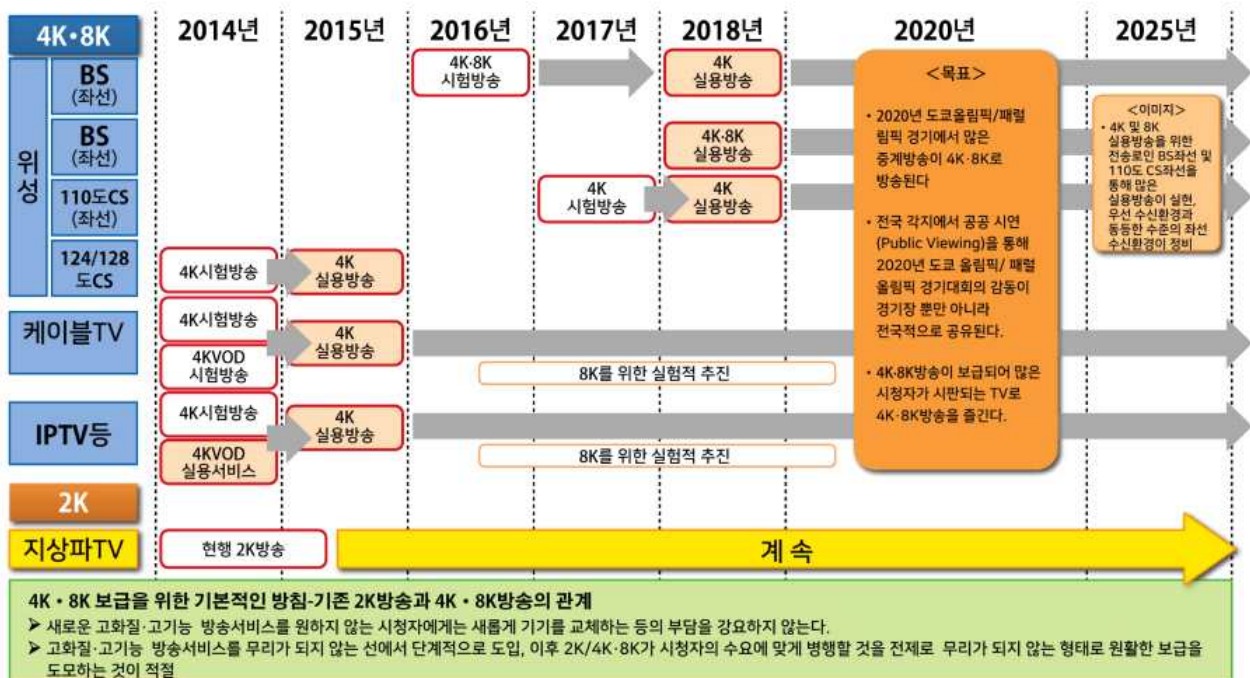
80)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4620.pdf

81) https://www.tele.soumu.go.jp/horei/law_honbun/00004680.html

4) 4K·8K방송 정책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총무성은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방송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2013년 6월 '방송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검토회: 현재까지의 검토결과 정리(放送サービスの高度化に関する検討会 これまでの検討結果について とりまとめ)'에서 4K·8K(수퍼하이비전), 스마트TV, 케이블 플랫폼 등의 현황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4K·8K와 관련하여 총무성은 일본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4K·8K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4K·8K의 전송로, 도입주체, 단계별 도입목표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책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재팬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⁸²⁾ 2013년 9월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서 4K·8K, 차세대TV에 대한 수요증가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총무성은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2020년 전국가구의 약 50% 보급을 목표로 아래 그림과 같은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김민지, 2019).⁸³⁾

< 4K·8K 추진 로드맵 >



※ 출처 : 총무성 홈페이지⁸⁴⁾; 김민지(2019).

8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 일본 총무성의 방송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발전 로드맵,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65호, 86-94.

83) 김민지(2019).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미디어이슈&트렌드」, 제22권(2019.8.), 62-77.

84)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housou_suishin/4k8k_suishin/policy.html

먼저 총무성은 4K에 주력하는 소니, 파나소닉 등 자국 TV제조사의 회생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긴 2014년 6월 2일 4K 시험방송을 시작하였다. 시험방송은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방송 추진포럼이 스카이퍼펙JSAT 위성을 통하여 하루 6시간씩 음악, 여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형태였다.⁸⁵⁾ 총무성은 유료 위성채널인 CS에서 시작하여 무료 위성채널인 BS, 지상파방송으로 지속 확대하고,⁸⁶⁾ 이를 통해 TV수상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였다. Full HD 해상도 4배 이상을 지원하는 4K 방송은 기존 TV수상기로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NHK기술연구소는 1995년부터 8K 방송 조기실현을 위하여 방송제작 장비, 방송시스템, 8K TV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스포츠 이벤트, NHK <홍백가합전(こうはくががっせん)> 등 프로그램에서 8K 방송을 시연하였다(김민지, 2019).⁸⁷⁾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18년 12월 1일 위성을 통한 4K·8K 본방송이 개시되었다. 일본 방송서비스고도화 추진협회(A-PAB, The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Advanced Broadcasting Services)⁸⁸⁾⁸⁹⁾에 따르면, 현재 4K BS 9개 채널, 8K BS 1개 채널 등 10개 채널이 방송되고 있으며, 4K·8K 위성방송 시청가능 기기 보급대수는 2024년 7월 말 기준 누적 2,027만 5,000대를 기록하였고, 2028년 4,000만 대 이상 돌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⁹⁰⁾

< 4K·8K 채널 현황 >



※ 출처: <https://www.apab.or.jp/4k-8k/satellite/>

85) <https://www.ajunews.com/view/20140601183907494>

86) https://iitp.kr/kr/1/knowledge/organScrapView.it?masterCode=publication&searClassCode=K_OGS_01&identifier=02-004-130130-000013

87) 김민지(2019).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미디어이슈&트렌드』, 제22권(2019.8.), 62-77.

88) 방송서비스고도화추진협회는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디지털방송추진협회(DPA)'와 4K·8K 등 방송고도화를 추진해 온 '차세대방송추진포럼(NexTV-F)'이 통합되어 2016년 4월 1일 발족한 단체이다. 역할은 방송 및 방송 관련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사양의 검토나 검증·평가 실시, 텔레비전 기술 기반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 문화의 창성에 공헌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89) <https://www.apab.or.jp/>

90) <https://xtech.nikkei.com/atcl/nxt/news/24/01465/>

총무성은 2023년 7월 18일 정보통신심의회 자문을 거쳐 위성방송에서 제공되고 있는 4K·8K 방송을 지상파방송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표준을 발표하였다. 총무성은 2019년 6월 정보통신심의회에 지상파 4K 방송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2023년 7월 18일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방송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放送システムに関する技術的条件)이라는 답신을 받아 기술표준을 확정하였다. 차세대 지상파방송 해상도는 2K와 4K이다. 4K는 BS위성방송과 동일하다. 8K는 조건부로 채용했다. 현재는 8K 화질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압축기술과 전송기술이 발전하면 채택한다는 계획이다(안창현, 2013).⁹¹⁾

91) 안창현(2023.7.31.) 日 총무성, 지상파 4K 방송 기술표준 발표. 『해외방송정보 ISSN 2951-2816(Online)』, KBS공영미디어연구소.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pmi/pc/board.html?smenu=25ac38>

4. 방송심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부가 자행한 언론탄압에 대한 반성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의거 총무성이 방송행정과 정책을 통해 방송사를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항은 많은 부분 개별 방송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1) 방송사 자율심의

일본은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강제적인 심의조항이나 행정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 시 외부 독립적인 제3자 심의기관에 추가 심의를 의뢰하기도 한다. 만약 개별 방송사 내부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법정필수기구)이나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 등 제3자 기관이 수행한 심의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상덕, 2009, 79쪽).⁹²⁾

일본 「방송법」 제6조와 제7조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명 이상의 위원(기간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 제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기관은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를 하고, 그 외에도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기준 및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기관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심의기관이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한 답변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개진한 의견의 내용 및 그 밖에 심의기관의 의사 개요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심의기관에 관한 「방송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⁹³⁾

< 심의기관에 관한 「방송법」 조항 >

제6조(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심의기관은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외에 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92) 문상덕(2009).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93) https://world.moleg.go.kr/web/wii/lgsInfoReadPage.do?CTS_SEQ=42431&AST_SEQ=157&nationReadYn=Y&ETC=4&searchNtnl=JP

- ③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기준 및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심의기관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방송사업자는 심의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에 응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방송사업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조치의 내용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 또는 취소한 방송의 실시 상황
 - 3.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제기된 고충 및 그 밖의 의견의 개요
- ⑥ 방송사업자는 심의기관의 답변 또는 의견을 방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심의기관이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한 답변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개진한 의견의 내용 및 그 밖에 심의기관의 의사 개요
 -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조치의 내용

제7조

- ① 방송사업자의 심의기관은 위원 7명(텔레비전방송에 의한 기간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의 심의기관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7명 미만의 정원) 이상의 조직으로 한다.
- ② 방송사업자의 심의기관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
- ③ 둘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의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관 위원의 위촉은 이러한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한다.
 - 1. 해당 방송사업자 중 동일한 인정방송지주회사의 관계회사(제1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회사를 말한다)인 기간방송사업자[기간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제91조제2항제2호의 방송대상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에서 같다)이 전국적인 자를 제외한다]가 둘 이상 포함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방송사업자 중에 기간방송사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기간방송사업자는 해당 기간방송사업자 이외의 모든 방송사업자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방송구역(「전파법」 제 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간방송 업무에 이용되는 기간방송국 면허장에 기재된 방송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업무구역(제126조제2항제4호의 업무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중복될 것
 - 가. 방송구역 또는 업무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의 면적이 해당 어느 하나의 일반 방송사업자의 업무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할 것
 - 나. 업무구역이 중복되고 업무구역이 중복되는 구역 내 인구가 해당 어느 하나의 일반방송사업자의 업무구역 내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할 것
 - 다. 해당 두 일반방송사업자의 업무구역이 속하는 도도부현이 동일할 것

2)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이하, BPO)는 NHK, 민영방송연맹(민방련)이 설치한 제3자 기관이다. 방송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시청자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하여 방송의 고충과 방송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1) 연혁

BPO는 1969년 NHK,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방송연합회가 설치한 「방송프로그램 향상 협의회」와 1997년 NHK와 민방련이 설립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BRO)」가 2003년 통합되어 설치되었다. 2007년 현재와 같은 3개 위원회(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체제를 갖추었다.

< BPO 연혁 >



년도	사항
1965	일본방송협회(NHK),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 사단법인 일본방송연합회(방송연합) 등 3자가 방송연합 내에 「방송프로그램 향상 위원회」 설치
1969	사단법인 일본방송연합회 해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향상 위원회'도 해소. NHK 및 민방련이 「방송프로그램 향상 협의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방송프로그램 향상 위원회」를 설치
1997	NHK와 민방련, 방송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위하여 자주적 제3자 기관으로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BRO)」를 발족시키고 '방송인권위원회'를 설치
2000	NHK와 민방련, 「방송프로그램 향상 협의회」 안에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과제를 심의하는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2002	NHK와 민방련, 방송계의 자주자율을 목표로, 3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송윤리·심의향상기구(BPO)」를 발족
2007	BPO, NHK, 민방련은 프로그램 조작이 사회적 비판을 받은 것을 계기로 BPO 기능 강화에 합의. 허위의 방송이나 방송 윤리상의 문제를 심리·심의하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를 BPO 내에 설치하고, '방송프로그램위원회'는 해체

※ 출처 : BPO 홈페이지⁹⁴⁾

94) https://www.bpo.gr.jp/?page_id=1074

(2) 구조

BPO는 2024년 3월 기준 NHK, 민방련, 민방련 회원사(207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3개 위원회와 평의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이뤄져 있다.

① 3개 위원회

❖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⁹⁵⁾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취재·제작 본연의 자세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방송윤리상의 문제 유무를 심의·심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결정으로 공표·게재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둘째 주 금요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한다.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023년 4월 기준 위원장 1명, 위원장 대행 2명, 위원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의결은 위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원의 일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수결에 의한다. 찬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판단한다.



※ 출처 : BPO 홈페이지

❖ 방송인권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⁹⁶⁾는 방송으로 인한 명예, 사생활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을 받고 심리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신청을 받아 심리를 진행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셋째 주 화요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024년 4월 기준 위원장 1명, 위원장 대행 2명, 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5) https://www.bpo.gr.jp/?page_id=799

96) https://www.bpo.gr.jp/?page_id=950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⁹⁷⁾는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청소년 출연자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등 시청자 의견으로 지적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심의하고 의견을 공표한다. 또 전국의 중고생 모니터로부터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리포트를 매월 제출받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제작자와의 의견 교환이나 방송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넷째 주 화요일) 개최한다. 2024년 4월 기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3개 위원회 결정절차 비교 >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토의(討議)	검토(検討)	토론(討論)
사전에 사무국의 조사(방송한 영상이나 관계 자료를 국으로부터 입수)나, 방송국의 보고를 기초로, 위원회로서 심의·심리를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토의한다. 심의·심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관하여 「심의입(審議入り)」, 「심리입(審理入り)」을 결정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프로그램도 시청하여 심리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주로 '청소년이 시청하는데 문제가 있다' 등의 시청자 의견이 있었던 프로그램을 시청하여 심의 여부를 토론한다.
↓	↓	↓
심의(審議)·심리(審理)	심리(審理)	심의(審議)
위원회의 담당 위원들이, 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윤리 위반이나 허위·조작 내용의 유무 판단은 「위원회 결정」으로, 심의사안은 「의견」으로, 심리사안은 「권고」 또는 「견책」으로 정리한다.	심리는 신청인과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실시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위원회 결정」으로서 「견해」 또는 「권고」로 정리한다.	개별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경우는 방송국의 제작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서면질문을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문제점을 논의하여 「위원회의 생각」을 정리한다. 또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의 「견해」로 할 수 있다.
↓	↓	↓
통지(通知)·공표(公表)	통지(通知)·공표(公表)	공표(公表)
「의견」, 「권고」, 「견책」을 방송국에 통지한 후 기자회견을 실시해 공표한다.	「위원회 결정」을 신청인과 방송국에 통보한 후 기자회견을 실시해 공표한다.	「견해」 등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을 실시해 공표한다.

※ 출처 : BPO 홈페이지⁹⁸⁾

97) https://www.bpo.gr.jp/?page_id=958

98) https://www.bpo.gr.jp/?page_id=10460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설립경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까지의 흐름이나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 또는 심리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때,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토의'를, 방송인권위원회는 '검토'를, 청소년위원회는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방송윤리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프로그램을 '심의', '내용 일부에 허위가 있다'고 지적된 프로그램을 '심리'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방송인권위원회는 '심리', 청소년위원회는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평의회

평의회(評議員会)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방송사업자 임직원 이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024년 6월 기준 7명(회장 1명, 회장대행 1명, 평의원 5명)이다. 평의회는 BPO에 있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放送倫理検証委員会)」, 「방송인권위원회(放送と人権等権利に関する委員会)」, 「청소년위원회(放送と青少年に関する委員会)」의 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은 제3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임직원 이외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

이사회(理事会)는 이사장 1명과 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및 관련 경험자 이외에서 선임된다. 이사는 방송사업자 임직원 이외에서 이사장이 3명을 선임하고,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각각 3명을 선임한다. 감사(監事)는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으로부터 각각 1명이 선임되어 BPO의 임원으로서 BPO의 회계, 이사장, 전무이사, 사무국장의 직무 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3) 3개 위원회 운영규칙

●●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2016년 개정, 동년 6월 1일 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⁹⁹⁾

99) https://www.bpo.gr.jp/?page_id=903

<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생략)

제2장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 향상에 관한 토의·심의 (생략)

제3장 허위방송에 관한 심리

(심리의 대상)

제5조

1. 위원회는 허위의 의심이 있는 프로그램이 방송됨으로써 시청자에게 현저한 오해를 준 혐의가 있다고 토의에서 판단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하, “대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해 방송윤리 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2. 대상 프로그램은 이하의 프로그램 중에서 결정한다.
 - (1) 방송사업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던 프로그램
 - (2) 프로그램 관계자나 외부 관계자, 시청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프로그램
 - (3)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로그램

(위원회에 의한 조사)

제6조

1. 위원회는 대상프로그램의 심리(또는 심리를 실시할 것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방송사업자(이하 “해당 방송사업자”라 한다) 및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보고 및 방송완료테이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청취)를 실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별조사팀)

제7조

1.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1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집중적·기동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조사팀은 위원회의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대해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조사팀 편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미리 조사고문(調査顧問)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권고, 견해)

제8조

1. 위원회는 대상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에 윤리 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방송 윤리 상의 문제점을 '권고' 또는 '견해'로 정리하여 해당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프로그램 심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표한다. 또 그 내용을 기구의 구성원에게 보고한다.
2. 공표는 기자회견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를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발방지계획)

제9조

1. 위원회는 '권고' 또는 '견해' 중에서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발방지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재발방지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방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이것을 책정해, 위원회에 대해 서면에 의해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공표한다. 해당 방송사업자는 전항에 의해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위원회는 재발방지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하여 각각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내용을 기구의 구성원에게 보고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부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제10조

1.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이하 '외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외부조사위원회의 위원 인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방송사업자가 외부조사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위탁한 구체적인 항목(이하 '조사항목'이라 한다)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항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항목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외부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외부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경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생략)

제5장 부칙 (생략)

❖ 방송인권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는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초상 등의 권리 침해 및 이와 관련된 방송 윤리상의 문제에 대하여 심리한다. 대상은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이다. 방송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2024년 6월 1일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⁰⁾

< 방송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생략)

제2장 회의의 소집 및 개최 (생략)

제3장 민원의 취급기준

제5조

1. 위원회는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한다.
 - (1)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초상 등의 권리 침해 및 이와 관련된 방송 윤리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공평·공정을 결여한 방송에 의해 현저한 불이익을 입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 (3) 방송 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및 방송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 방송된 프로그램의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및 이와 관련된 방송윤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 (4) 심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하여 고충민원인과 방송사업자 간의 협의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기되고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기된 것으로 한다.
 - (5) 신청 관련 방송 분쟁이 소송, 조정 등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안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또 신청 후 민원인, 방송사업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법부에 해결을 맡기거나 민원인이 방송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단계에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 (6)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방송에서 거론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또는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체의 신고는 위원회에서 단체의 규모, 조직, 사회적 성격 등

100) https://www.bpo.gr.jp/?page_id=1141

- 에 비추어 구제의 필요성이 높은 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급할 수 있다.
- (7) 방송프로그램 제작 담당자 개인에 대한 신청은 심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8) CM에 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9) 이미 이루어진 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은 심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에 관계없이 해당 민원을 심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과 관련된 방송 내용, 권리침해 정도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황에 비추어 심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선직(公選職)에 있는 자 또는 그에 대한 후보자의 신청으로써, 신청과 관련된 방송 내용이 명백히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민원인이 민원을 협상의 도구로 삼아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방송사업자와의 대화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및 기타 기구 및 위원회의 목적 등에 비추어 심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는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리를 개시한 후에 전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단계에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극히 중대한 권리침해 및 방송윤리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5.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방송관계자에 의한 중대한 권리침해 등을 수반하는 취재활동 방송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 중이며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소속의 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민원의 수리, 심리의 절차

제6조

1. 고충민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서면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기한다.
2. 제기된 민원의 수리 및 심리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의한다.

제7조 위원회는 사무국이 사전에 수리·수집·작성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심리한다.

제5장 사정청취, 테이프의 제출 등

제8조

1. 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신청인 및 당해 방송사업자(제작사 등을 포함한다)에게 사정을 듣는 외에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완료테이프 기타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방송이 끝난 테이프를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자 외에 안건과 관련된 자에게 사정을 듣는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신청료

제9조 민원신청인의 위원회에 대한 심리신청은 무료로 한다.

제7장 공개

제10조

1.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정청취는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리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제8장 권고, 견해

제11조

1. 위원회는 심리의 결과를 "권고" 또는 "견해"로 하여 정리하고, 심리의 경과를 포함하여 민원신청인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통지의 내용은 기구의 구성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신청인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공표할 것을 통고한 후 기구가 위원회명으로 공표한다.
3. 전항의 공표에 있어서 위원회는 실명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신청인의 사전 승낙을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익명으로 한다.
4. 공표는 기자회견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의 결과를 방송할 것을 당해 방송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여비 등의 지급 (생략)

제10장 의결방법 등

제13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 및 위원장 대행 중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사회하고, 의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대하여 의제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원의 일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다수에 의한 의결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다. 다수결에 의한 의결의 경우에는 "권고" 또는 "견해"에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장 사무국 (생략)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放送と青少年に関する委員会)는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의견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견해를 공표할 수 있다. 청소년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자, 청소년, 보호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표하며,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2004년 4월 1일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¹⁾

< 청소년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칙」 주요내용 >

총칙

제1조 (생략)

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2조 (생략)

시청자 의견 취급

제3조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의 취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일반 시청자로부터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 (2) 시청자는 의견을 사무국에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3)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사실 확인, 집계·요약 등을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방송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위원회 심의절차

제4조 위원회는 사무국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제5조 위원회는 심의 시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의 “견해”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은 위원회의 “견해”에 개별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의견에 위원명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1) https://www.bpo.gr.jp/?page_id=1141

통지·공표

제8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의 개요, 심의결과, 해당 방송사업자의 대응 등을 월보 등에 정리하여 구성원, 청소년 관계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 기구가 발행하는 「BPO보고」나 홈페이지에 게재, 기자회견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해 공표한다.

개정

제9조 이 규칙의 개정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구이사회를 승인을 요한다.

5. 광고심의

1)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일본의 광고심의를 자율심의기구인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심사기구(日本廣告審査機構,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이하 JARO)가 수행한다. JARO는 1974년 8월 28일 설립되어 동년 7월 15일 사단법인 허가, 2011년 4월 1일 공익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회원사는 2024년 3월 현재 887개사(광고주 370사, 신문 78개사, 방송 178개사, 출판 41개사, 매체 25개사, 광고회사 165개사, 광고관련 30개 사)이다.¹⁰²⁾ JARO는 회원사가 납부하는 입회금과 회비로 운영된다. 입회금은 1만 엔, 회비는 연간 15만 6천 엔(월 1만 3천 엔)이다.¹⁰³⁾

JARO는 기업과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JARO는 광고와 관련된 모든 업계의 상호 협력,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요망에 부응하여 그 이익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규제를 줄어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¹⁰⁴⁾

2) JARO의 주요활동

(1) 광고·표시에 대한 의견 접수

JARO는 소비자로부터 광고에 관한 다양한 의견(예: 광고와 실체가 달랐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불쾌했다, 힘이 난다, 감동이다, 생각하게 됐다 등)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FAX, 우편 등이다. 의견 제출 시는 광고·표시의 문제점이나 좋았던 점, 광고주·상품명·서비스 명칭, 매체명(TV방송국명, 신문명 등), 광고가 나온 날짜와 시간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2) <https://www.jaro.or.jp/about/gaiyou/index.html>

103) https://www.jaro.or.jp/about/gaiyou/mokuteki_naiyou.html

104) <https://www.karb.or.kr/rules/overseaAdvertisement2.aspx>

< JARO 의견접수 안내 >

The image shows the JARO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JARO logo, navigation links (JAROについて, 入会案内, 会員社一覧, 資料室, 学生・消費者のみなさまへ), and a search bar. The main banner reads "広告みんなの声 VOICES FOR ADVERTISING". Below this, a section titled "広告・表示へのご意見や苦情を、オンライン・電話・FAX・郵便でお受けしています。" (We accept your opinions and complaints regarding advertising and labeling via online, phone, fax, or mail.) lists three methods:

- オンライン (Online):** "「広告みんなの声」送信フォームよりご意見を募集しております。" (We are recruiting your opinions via the 'Voices for Advertising' submission form.) A button says "ご意見はこちら →".
- 電話・FAX (Phone/FAX):**
 - 東京 (Tokyo): TEL 03-3541-2811, FAX 03-3541-2816
 - 大阪 (Osaka): TEL 06-6344-5811, FAX 06-6344-5916

電話受付時間 (土・日・祝日・年末年始を除く) 10:00~12:00 / 13:00~15:00

※ 研修等でお休みを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 お電話は、内容を正確に把握するため通話を録音させていただきます。
- 郵送 (Mail):**
 - 東京 (Tokyo):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2-16-7 銀座2丁目松竹ビルANNEX
 - 大阪 (Osaka): 〒530-0001 大阪市北区梅田2-5-8 千代田ビル西別館

公益社団法人 日本広告審査機構 「広告みんなの声」係

※ 출처 : JARO 홈페이지¹⁰⁵⁾

(2) 광고·표시에 대한 불만처리

JARO는 광고·표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주에게 의심스러운 표현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JARO는 규정에 따라 공정한 광고·표시 관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관행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 유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5) <https://www.jaro.or.jp/koe/index.html>

(3) 회원상담실

회원사에 대하여 광고·표시가 경품표시법을 비롯한 법률이나 규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소비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한다.

(4) 사례집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사례집으로 발간한다.

(5) JARO의 계발활동(啓発活動)

<JARO 광고연구세미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품표시법 등 법률 사항이나 광고·표시 나아가 광고표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 또한 회원사나 행정·교육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한다. 광고법규, 광고윤리, 광고에 대한 올바른 견해 등에 관하여 JARO 상담사례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민강좌·대학특별강좌를 개최한다.

(6) 행정·지자체·관계단체와의 제휴협력

JARO는 광고·표시의 적정화를 위하여 소비자청, 경제산업성 등 12성청과의 행정연락회, 소비자청 표시대책 간담회, 국민생활센터와의 간담회, 5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시즈오카현)의 경품표시법 담당자와의 간담회, 공정거래협의회·민간자주규제단체 등 관계단체와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전국의 회원 매체사와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연락회를 개최하고 있다.

II. '방송을 통한 피해로부터 보호·구제받을 권리' 보호 제도



II. '방송을 통한 피해로부터 보호·구제받을 권리' 보호 제도

1. 방송사

개별 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청자 의견, 문의, 민원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NHK는 '의견 및 문의' 메뉴에서 전화번호,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안내하고 있다. 또 NHK프로그램, 수신료, 텔레비전 영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NHK 의견 및 문의 >



更新情報

2024.10.17	週刊みなさまの声(10月7日~10月13日)	NEW
2024.09.24	月刊みなさまの声(8月)	NEW
2024.05.22	年間まとめ(2023年度 みなさまの声の総勢と内容)	PDF

※ 출처 : NHK 홈페이지¹⁰⁶⁾

TV아사히의 경우도 문의 메뉴를 통하여 자사에 관한 의견, 문의, 민원 등에 대응하고 있다. FAQ형태의 질문과 답변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고, 하단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과 TV아사히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 문의할 수 있게 배치하고 있다. 이외에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게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그림 44] TV아사히 의견·감상 문의

ご意見・ご感想 お問い合わせ

よくある質問

番組で放送したお店の情報を教えてください

番組のホームページに情報が掲載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まず番組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掲載がない場合は、「視聴者センター」の**入力フォーム**にてお問い合わせ下さい。

※都合によりお答えできない場合もございます。

●よくお問い合わせいただく番組

番組で紹介した料理のレシピを教えてください

番組のホームページに情報が掲載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まず番組のホームページ（または公式SNS）をご覧ください。掲載がない場合は、「視聴者センター」の**入力フォーム**にてお問い合わせ下さい。

※都合によりお答えできない場合もございます。

●よくお問い合わせいただく番組

番組で使用した衣装、小道具、セットを教えてください

出演者の衣装、小道具、セット(小物・置物も含む)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お答えしておりません。まれに番組ホームページや番組公式SNSでお知らせしてい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番組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アナウンサーの衣装については、番組ホームページや**アナウンサーのSNS**でお知らせしている場合もございます。

番組で使われた曲を教えてください

番組のテーマソング、エンディングの音楽については、番組のホームページに情報が掲載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まず番組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掲載がない場合は、「視聴者センター」の**入力フォーム**にてお問い合わせ下さい。

なお、BGM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お答えしておりませんが、番組によってはご案内できる場合もございますので、「視聴者センター」の**入力フォーム**にてお問い合わせ下さい。

※ 출처 : TV아사히 홈페이지¹⁰⁷⁾

106) <https://www.nhk.or.jp/css/>

107) <https://www.tv-asahi.co.jp/contact/>

2.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이들 의견은 매일 요약 정리되며, 위원회(Committee)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대한 의견은 해당 방송사에게 통보된다. 주요 의견의 요약본은 매월 BPO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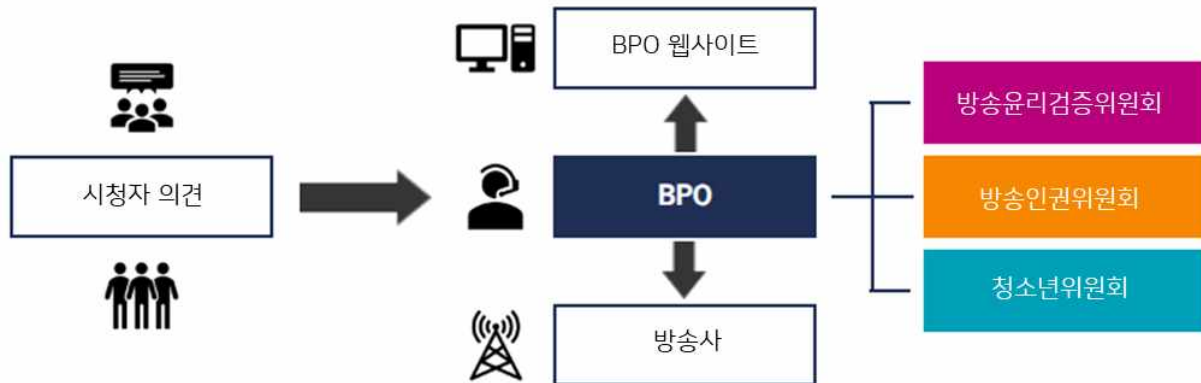
< BPO 의견접수 페이지 >

※ 출처 : BPO 홈페이지¹⁰⁸⁾

108) https://www.bpo.gr.jp/?page_id=967

의견이 접수되면 BPO 각 위원회에 시청자 의견으로 보고되어 위원회 활동에 활용된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대한 의견은 해당 방송사로 보내진다. 시청자 의견은 BPO의 홈페이지나 간행물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개인명, 방송국명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요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음).

< 시청자 의견 접수 경로 >



※ 출처 : BPO 홈페이지¹⁰⁹⁾

BPO의 연도별 시청자 의견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BPO 시청자 의견 접수현황 >

계약유형	2018		2019		2020		2021	
	건	%	건	%	건	%	건	%
전화	3,880	23.1	3,936	18.8	2,280	10.3	1,911	9.2
이메일	12,681	75.5	16,687	79.9	19,438	88.0	18,485	89.2
팩스	85	0.5	107	0.5	143	0.7	170	0.8
우편	148	0.9	165	0.8	221	1.0	160	0.8
계	16,794	100.0	20,895	100.0	22,082	100.0	20,726	100.0

※ 출처 : BPO 홈페이지¹¹⁰⁾

109) https://www.bpo.gr.jp/?page_id=11020

110) https://www.bpo.gr.jp/?page_id=11020

3.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JARO는 광고·표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주에게 의심스러운 표현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JARO는 규정에 따라 공정한 광고·표시 관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관행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 유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JARO의 광고·표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¹¹¹⁾

- 공정하고 진실해야 한다.
- 소비자에게 해롭지 않아야 한다.
-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사회적 예의와 관습을 준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및 규정과 공공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JARO의 불만접수(도쿄 본사 및 오사카 지사) 및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²⁾ 먼저 JARO 직원이 온라인, 전화 또는 소비자나 경쟁업체가 발송하는 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JARO는 접수된 불만과 관련된 광고주를 식별하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처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처리 진행으로 결정되면, 해당 광고주에게 JARO를 통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답변 제출을 할 것을 요청한다. 답변이 민원인을 만족시키고 광고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민원은 종결된다. 그러나 민원인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거나 JARO가 광고에서 의심스러운 주장을 발견하는 경우 공식 검토 절차에 진입한다. 공식 검토 절차는 업무위원회(Advertising Review Committee, ARC) 및 분과회, 심사위원회(Self-Regulatory Bodies, SRB)가 수행한다.

ARC는 기업의 고위 임원 16명으로 구성되며 광고 관련 민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ARC 분과회에는 6개가 있으며, 기업의 임원급 14명으로 구성된다. ARC는 분과회 중 하나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된다. 여기에는 해당 광고 또는 TV광고 사본, 미디어, 광고 관련 그룹 또는 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이나 정보가 포함된다. 분과회는 자료를 검토하여 통상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의 주장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여 ARC에 제출한다. ARC는 분과회가 작성한 권고안을 재검토하고 이를 승인한다. 승인된 권고안은 JARO의 명의로 발효된다. 권고안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광고기관에 사본이 전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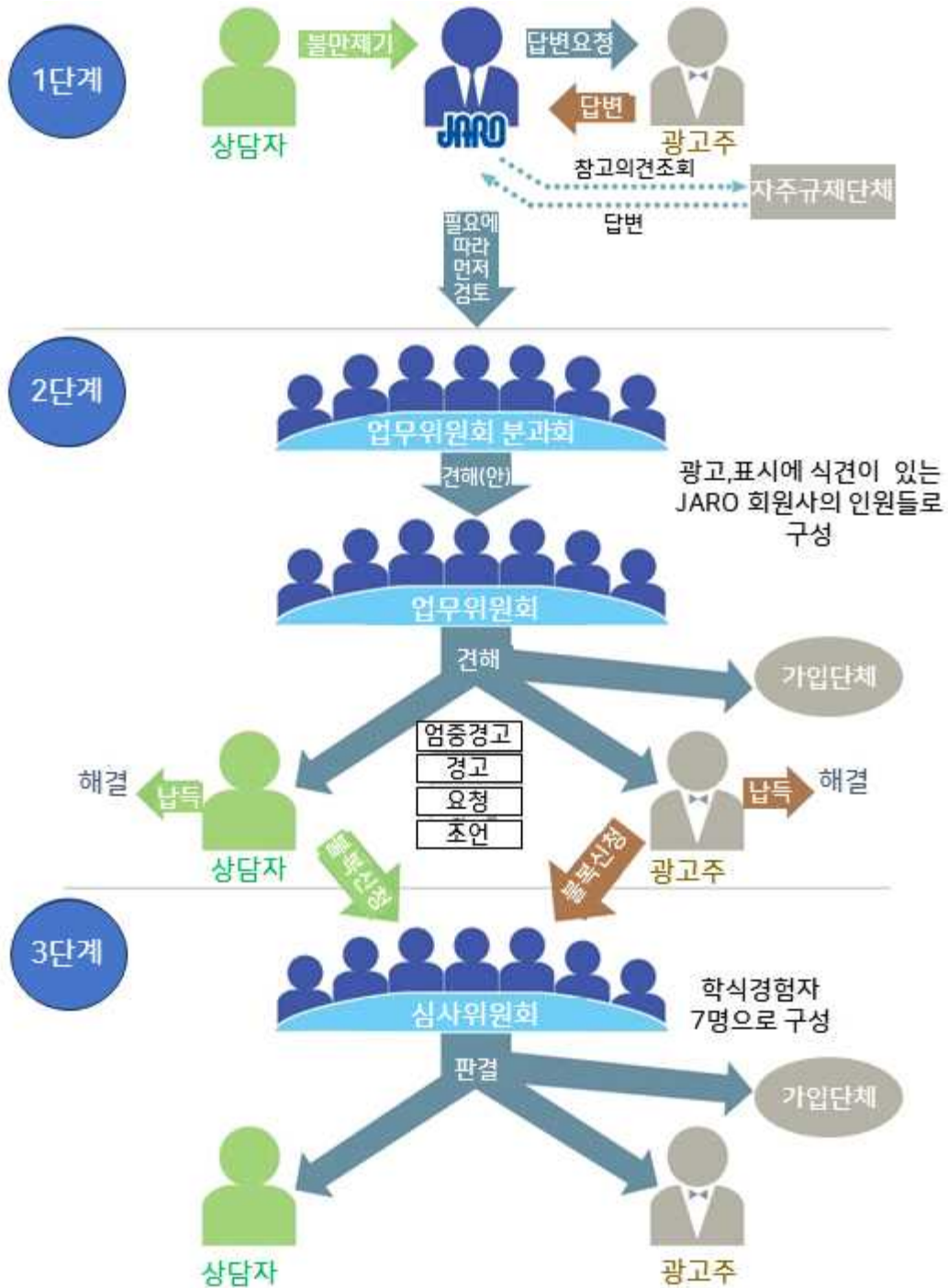
광고주 또는 민원인이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ARC는 SRB에 제출한다. SRB는 업계 외부에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SRB는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양측이

111) <https://www.jaro.or.jp/about/gaiyou/kijyun.html>

112) <https://www.jaro.or.jp/english/en2.html>

이 결정을 수락하도록 요구한다. 결정문 사본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ARC의 권고사항, SRB의 결정에 따라 광고주는 수정된 광고 또는 새로운 광고를 JARO에 제출하여야 한다.

< JARO 불만처리 절차 >



* 상기는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개별 안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출처 : JARO 홈페이지¹¹³⁾

III. '격차 없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제도



Ⅲ. '격차 없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제도

1. 장애인방송

시각·청각 장애인이 방송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여 사회에 참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총무성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의 보급을 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의 방송 노력 의무화」, 「자막방송·해설방송·수어방송에 있어서 보급 목표의 책정, 실시상황의 공표」,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어 프로그램 등의 제작 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1)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 노력 의무화

1997년 「방송법」이 개정되어 텔레비전 방송사로 하여금 자막 프로그램·해설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다.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 노력 의무화 조항 >

일본 「방송법」 제2장 제4조(국내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②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에 의한 국내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때에는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시각장애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음성 및 그 밖의 음향을 들을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음성 및 그 밖의 음향을 청각장애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자 또는 도형을 볼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지침

(1) 자막방송보급 행정지침(1997.11.)

舊우정성(郵政省)은 1997년 「방송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1997년 11월 「자막방송보급 행정지침(視聽覺障害者向け放送普及行政の指針)」을 책정하였다. 이 지침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막방송 보급 정책을 담고 있다. 2007년 실적에서 자막부여 가능한 방송시간 중에서 자막방송 시간이 차지한 비율이

NHK(종합)에서 100%, 민간방송 키 5국(일본테레비, 텔레비전아사히, TBS, 텔레비도쿄, 후지테레비)에서 평균 89.0%로 나타났다(김여라, 2010, 29쪽; 총무성 홈페이지).¹¹⁴⁾¹¹⁵⁾

(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보급 행정지침(2007.10.)

총무성은 「1997년 행정지침」 갱신을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디지털방송시대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에 관한 연구회(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를 5회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2007년 3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행정지침 책정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무성은 2007년 10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보급 행정지침(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普及行政の指針)」을 책정하였다.¹¹⁶⁾

< 자막방송(※1) >

	보급목표 대상		목표	비고
	대상시간	대상프로그램		
NHK	7시부터 24시	자막부여 가능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2)	2017년도까지 모든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을 부여한다
방송대학학원			청각장애인 등의 요구 실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이 자막 부여	
지상계민방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NHK의 방송 제외)			2017년까지 모든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현 지역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을 부여한다. 독립U국 및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에 대해서는 목표 연차를 탄력적으로 목표 연차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 유선텔레비전방송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1. 자막방송에는 데이터방송이나 오픈자막으로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막부여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 ① 기술적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예: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생방송 프로그램)
- ② 외국어 프로그램
- ③ 대부분 기악으로 연주되는 음악 프로그램
- ④ 권리 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114) 김여라(2010).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 현안보고서 Vol. 112. 국회입법조사처.

115)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b_free/b_free02b.html

116) 송종길 외(2010).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10-진흥-다-23). 193쪽.

< 해설방송 >

	보급목표 대상		목표	비고
	대상시간	대상프로그램		
NHK	7시부터 24시	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201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10% 에 해설 부여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 을 부여한다
방송대학학원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실태를 바탕으로 가능 한 한 많은 해설 부여	
지상계민방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NHK의 방송 제외)			2017년까지 대상 방 송프로그램의 10%에 해설 부여	현 지역국에 대해서는 가능 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해 설을 부여한다. 독립U국 및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에 대 해서는 목표 연차를 탄력적 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 유선텔레비전방송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 보급 행정지침 책정 후에는 기술동향 등을 근거로 5년 후를 목표로 재검토를 실시한다.

「2007년 행정지침」이 「1997년 행정지침」과 달라진 점은 자막방송 의무제공 대상 프로그램 범위 확대, 화면 해설방송 목표치 추가를 들 수 있다. 「2007년 행정지침」에서는 2017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 전체에 자막을 부여하고, 대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24시로 한정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은 2017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10%(NHK 교육방송의 경우 15%)까지 실시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5년째 되는 해에 기술동향 등을 참고하여 행정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김여라, 2010, 30쪽).¹¹⁷⁾¹¹⁸⁾

이에 총무성은 2012년 1월부터 「디지털방송 시대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의 충실화에 관한 연구회(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の充実に関する研究会)」를 4회 개최하였다. 동년 5월 연구회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년 간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송출실적 측면에서 자막방송은 확실한 실적을 보였으나 화면해설방송은 홍보, 수화방송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기술동향 변화 측면에서 기술이 발전하였으나 추가적인 과제나 시장규모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실현이 어려웠으며,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측면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제도 추진본부 설치, 장애인기본법 공포 등이 이뤄졌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긴급방송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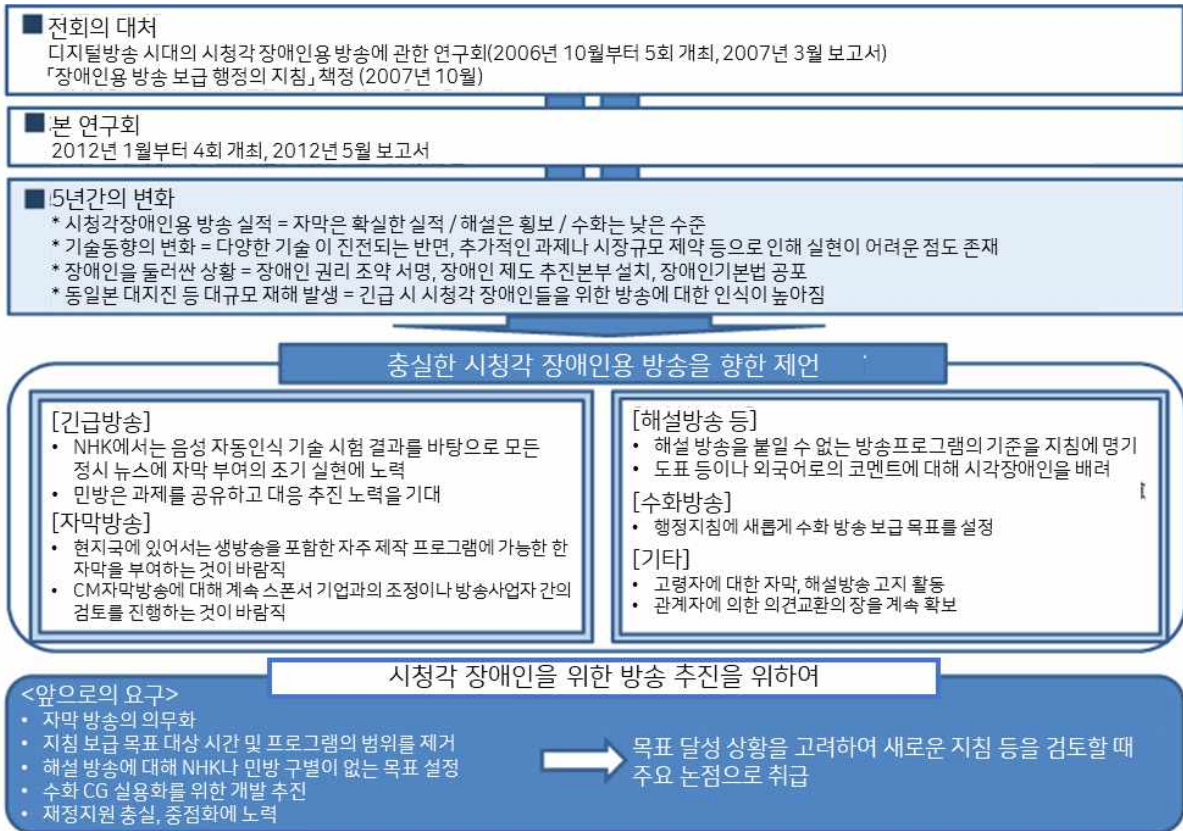
117) 김여라(2010).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 현안보고서 Vol. 112. 국회입법조사처.

118)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126735.pdf

NHK는 음성 자동인식 기술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정시 뉴스 자막부여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민영방송은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 둘째, 로컬방송국에서는 생방송을 포함한 자주 제작 프로그램에 가능한 한 자막을 부여하는 것이 요망되며, CM 자막방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원 기업과의 조정이나 방송사업자 간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해설방송 등에서는 해설방송을 포함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기준을 지침에 명기하고, 도표 등이나 외국어로 된 코멘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수화방송에서는 행정지침에 새롭게 수화방송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사항으로 고령자에 대한 자막방송, 해설방송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계자 간 의견교환의 장을 계속 확보한다.

나아가 한층 더 내실 있는 시각·청각 장애인용 방송추진을 위하여 자막방송의 의무화, 지침 보급 목표 대상 시간 및 프로그램 틀의 분리,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NHK와 민영방송 구분이 없는 목표 설정, 수화CG 실용화를 위한 개발 추진, 재정지원의 내실화중심화에 노력 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디지털방송 시대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의 충실화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개요 >



※ 출처 : 총무성 홈페이지¹¹⁹⁾

상기 보고서를 토대로 총무성은 2012년 10월 지침을 재검토하여 수화방송이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시 방송에 대한 목표치를 포함시켰다.

119)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160370.pdf

(3)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

① 2018년 2월 7일 책정¹²⁰⁾

총무성은 2017년 9월부터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에 관한 연구회(視聴覚障害者等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를 개최하고, 동 연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放送分野における情報アクセシビリティに関する指針)」을 책정하였다.

2018년 지침에는 기술동향 등을 바탕으로 5년 후 목표를 수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총무성은 2022년 11월부터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의 충실화에 관한 연구회(視聴覚障害者等向け放送の充実に係る研究会)」를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2023년 8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총무성은 동 연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2023년 10월 17일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② 2023년 10월 17일 개정¹²¹⁾

개정된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은 「방송법」 제4조제2항 등을 근거로 방송분야에서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막방송, 해설방송, 수화방송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장애인 기본법」,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의한 정보 취득 및 이용과 의사소통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논의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기회를 한층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그것의 잠재력과 위험을 인식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개발이나 논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침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제시된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달성한 경우 더 높은 목표치를 자주적으로 설정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총무성은 매년도 방송사업자의 실적을 정리하여 공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막방송(데이터방송이나 오픈자막에 의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은 6시부터 25시까지의 시간 중 연속으로 18시간 동안 자막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자막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시간에서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자막부여 가능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이란 ①기술적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예: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생방송 프로그램) ②외국어 프로그램 ③대부분 기악으로 연주되는 음악 프로그램 ④권리 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BS1, BS 프리미엄 및 BS4K가 'NHK BS' 및 'NHK프리미엄4K'로 프로그램 개정이 이

120)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b_free/b_free02b.html

121)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06717.pdf

루어진 경우 당분간 'NHKBS' 및 'NHKBS프리미엄4K'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자막방송 목표와 관련하여 NHK와 지상계 민영방송(현역국 제외)은 100%, 현역국은 2027년까지 80% 이상, BS위성방송(NHK의 방송 제외)은 2027년까지 50% 이상, CS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은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로 설정되어 있다.

< 자막방송(※1) >

	보급목표 대상		목표	비고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		
NHK		자막부여가능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모든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교육방송, BS1, BS4K 및 BS8K는 최대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 부여(※2), BS프리미엄은 대상 방송프로그램 전체에 자막 부여(※2)
지상계 민영방송 (현역국 제외)	6시부터 25시까지 연속된 18시간	(「자막부여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① 기술적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예: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생방송 프로그램) ② 외국어 프로그램 ③ 대부분 기악으로 연주되는 음악 프로그램 ④ 권리 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자막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모든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현역국)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80% 이상에 자막 부여. 가능한 모든 대상에 자막 부여	독립U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NHK의 방송 제외)			2027년도까지 모든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에 자막 부여. 가능한 한 모든 대상에 자막 부여	2000년도에 방송을 개시한 종합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027년도까지 가능한 한 대상 전체에 자막 부여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 유선텔레비전 방송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1 자막방송에는 데이터방송이나 오픈자막에 의해 프로그램 대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BS1, BS프리미엄 및 BS4K가 'NHKBS' 및 'NHK프리미엄4K'로 프로그램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분간 'NHKBS' 및 'NHKBS프리미엄4K'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자막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해설방송의 경우 보급목표 대상은 7시부터 24시까지 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이다. 여기서 「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에 의해 해설을 붙일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이란 ①권리처리상의 이유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②2개 국어 방송

이나 부음성 등 2개 이상의 음성을 사용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③5.1ch 서라운드 방송프로그램 ④주 음성에 부여하는 빈틈없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화면해설 목표와 관련하여 NHK와 지상계 민영방송(현역국 제외)은 2027년까지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15% 이상, 현역국은 10% 이상, BS위성방송은 5% 이상, CS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은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부여로 설정되어 있다.

< 해설방송(※3, ※4, ※5) >

	보급목표 대상		목표	비고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		
NHK	7시에서 24시	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에 의해 해설을 붙일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방송프로그램 ①권리처리상의 이유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②2개 국어 방송이나 부음성 등 2개 이상의 음성을 사용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③5.1ch 서라운드 방송프로그램 ④주 음성에 부여하는 빈틈없는 방송프로그램)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15% 이상에 해설 부여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20% 이상에 해설 부여,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5)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해설 부여
지상계 민영방송 (현역국 제외)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15% 이상에 해설 부여	
(현역국)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10% 이상에 해설 부여 노력	·독립U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에 해설 부여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NHK의 방송 제외)			·202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5% 이상에 해설 부여 노력	·2000년도에 방송을 개시한 종합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해설 부여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 유선텔레비전 방송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해설 부여	

※3 대규모 재해 시 등에 벨소리와 함께 긴급임시 문자수퍼로 송출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읽어주는 등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4 평시에 시청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벨소리와 함께 긴급임시 문자수퍼로 송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읽어주는 등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BS1, BS프리미엄 및 BS4K가 'NHKBS' 및 'NHKBS프리미엄4K'로 프로그램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분간 'NHKBS' 및 'NHKBS프리미엄4K'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목표에 접근하도록 해설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수화방송의 경우 2027년까지 NHK에 주당 평균 30분 이상, 지상계 민영방송(현역국 제외)에 대하여 주당 평균 15분 이상 수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재해 시 등에 수화통역자

가 동석하는 회견 등을 중계할 경우 가능한 한 수화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수화방송(※6) >

	목표	비고
NHK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제외)	2027년도까지 주당 평균 30분 이상 수화 부여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2027년도까지 주당 평균 5시간 이상 수화 부여
지상계 민영방송 (현역국 제외)	2027년도까지 주당 평균 15분 이상 수화 부여	

※6 대규모 재해 시 등에 수화통역자가 동석하는 회견 등을 중계할 경우, 가능한 한 수화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실시현황 공표

총무성은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배려한 자막방송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도 자막방송, 해설방송, 수화방송 실시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 바 있다.¹²²⁾

< 자막방송(2022년) >

※ []는 전년도차분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의 보급목표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 자막 프로그램의 비율	총 방송시간에서 자막방송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
NHK(종합방송센터)	100.0%[±0.0포인트]	90.6%[+1.8포인트]
NHK(교육)	95.4%[+1.1포인트]	85.9%[+0.8포인트]
재경키5국(在京キ一5局)	100.0%[±0.0포인트]	69.3%[+1.5포인트]
재한준키4국(在阪準キ一4局)	100.0%[±0.0포인트]	68.5%[+1.3포인트]
재명광역4국(在名広域4局)	100.0%[+0.1포인트]	62.5%[+1.4포인트]
계열현역101국(系列県域101局)	89.4%[+2.0포인트]	57.6%[+1.7포인트]
독립현역13국(独立県域13局)	44.7%[+4.6포인트]	17.8%[+0.7포인트]
NHK (BS1/BS프리미엄)	48.8%[+6포인트] /92.2%[+1.3포인트]	49.2%[+3.7포인트] /83.4%[±0.0포인트]
NHK (BS4K/BS8K)	91.2%[+3.4포인트] /76.2%[+2.1포인트]	86.1%[+2.8포인트] /77.9%[+9.7포인트]
민방키국계열BS사업자5개사 (2K방송/4K방송)	57.5%[+3.3포인트] /58.5%[+4.2포인트]	29.6%[+0.9포인트] /30.5%[+3.3포인트]

122)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9_02000331.html

< 해설방송(2022년) >

※ []는 전년도차분

	「방송분야 정보접근성에 관한 지침」의 보급목표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 자막 프로그램의 비율	총 방송시간에서 자막방송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
NHK(종합방송센터)	19.5%[+4.3포인트]	15.5%[+2.2포인트]
NHK(교육)	21.7%[+1.8포인트]	18.5%[+1.5포인트]
재경키5국(在京キ-5局)	19.1%[+1.6포인트]	6.8%[+0.3포인트]
재한준키4국(在阪準キ-4局)	16.4%[+0.2포인트]	5.0%[+0.2포인트]
재명광역4국(在名広域4局)	20.3%[+2.6포인트]	5.5%[+0.6포인트]
계열현역101국(系列県域101局)	10.9%[+2.1포인트]	4.7%[+0.7포인트]
독립현역13국(独立県域13局)	1.4%[+0.3포인트]	0.7%[+0.2포인트]
NHK (BS1/BS프리미엄)	3.5%[+0.5포인트] /12.7%[+1.6포인트]	2.0%[+0.3포인트] /9.0%[+0.9포인트]
NHK (BS4K/BS8K)	9.0%[+0.2포인트] /9.9%[+2.0포인트]	7.4%[+0.4포인트] /9.9%[+2.0포인트]
민방키국계열BS사업자5개사 (2K방송/4K방송)	1.3%[+0.2포인트] /1.3%[+0.2포인트]	0.7%[-0.1포인트] /0.8%[-0.1포인트]

< 수화방송(2022년) >

※ []는 전년도차분

	주당 수화방송시간(방송국당 평균)
NHK(종합방송센터)	59분[-17분]
NHK(교육)	4시간2분[-6분]
재경키5국(在京キ-5局)	26분[+8분]
재한준키4국(在阪準キ-4局)	20분[+7분]
재명광역4국(在名広域4局)	24분[+0분]
계열현역101국(系列県域101局)	21분[+1분]
독립현역13국(独立県域13局)	1시간22분[-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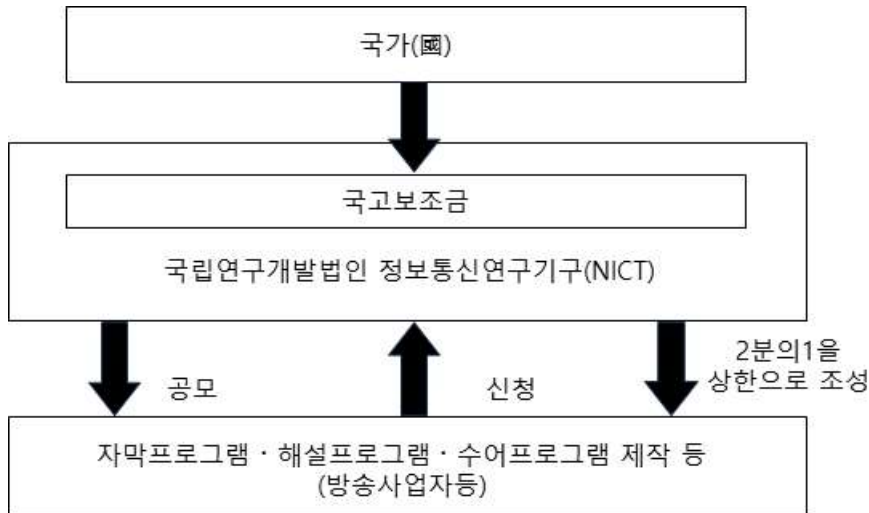
4)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프로그램 등의 제작 촉진

(1) 조성금 제도

일본은 시각·청각 장애인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일반회계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

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제작비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조성제도는 1993년부터 「신체 피해자의 편리 증진으로 하는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54호)」에 근거해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위성방송 수신대책기금 운용이익을 기반으로 자막 프로그램과 해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던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추가되었고, 1999년에 수화프로그램, 2010년에 수화 번역 영상을 각각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를 확충해 왔다.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 보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



※ 출처 : 총무성 홈페이지¹²³⁾

① 자막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 및 수화프로그램 제작촉진조성금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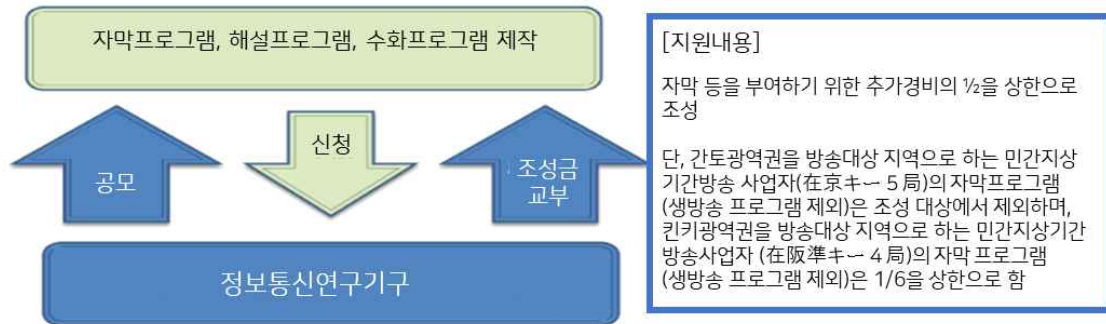
본 조성금(字幕番組、解説番組及び手話番組制作促進助成金)의 조성대상은 방송사업자 등이 조상대상기간(회계연도기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방송한 자막 프로그램(생방송 자막프로그램 포함), 해설 프로그램 및 수화 프로그램 제작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 시청연령 제한 프로그램(시청계약 시 연령확인, 페어런트락 등(ペアレンタルロック等)을 필요로 하는 것), 관동광역권(関東広域圏)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민간지상기간방송사업자(재경키5국)의 생방송이 아닌 자막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조성조건은 해당 연도에 방송하고 그 제작 경비를 해당 연도에 계상하는 프로그램일 것, 시각·청각 장애인이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자막 프로그램·해설프로그램·수화 프로그램일 것, 자막·해설·수화의 부여와 관련된 경비를 스폰서 등이 부담하고 있지 않을 것, 킨키광역권(近畿広域圏)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민간지상기간방송사업자(在阪準キー4局)의 자막 프로그램(생방송 프로그램 제외)에 대해서 3분의 1을 상한으로 스폰서 등의 경비 부담을 인정한다.

123)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b_free/b_free02b.html

124) <https://www2.nict.go.jp/barrierfree/102/index.html>

< 조성체계 및 지원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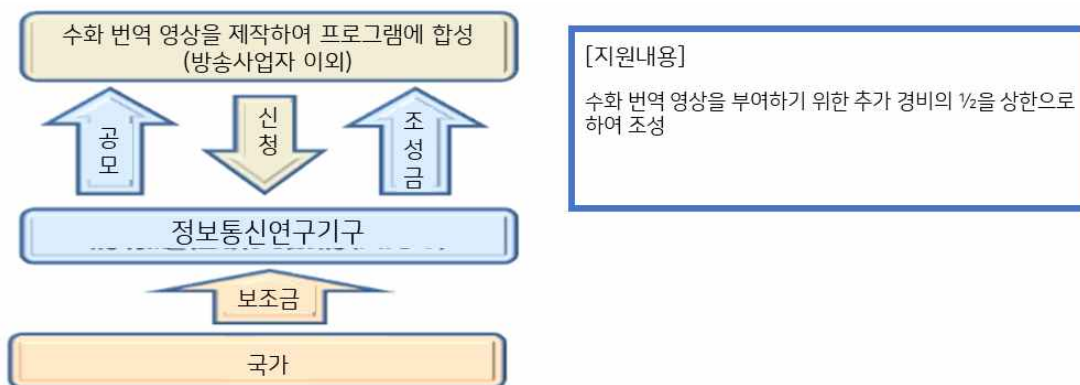
※ 출처 : 정보통신연구기구 홈페이지

조성금 액수는 조성대상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 중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조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경비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다만, 킨키광역권(近畿広域圏)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민간지상기간방송사업자(在京キ-5局)의 생방송을 제외한 자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6분의 1을 한도로 한다.

② 수어번역영상제공촉진조성금¹²⁵⁾

본 조성금(手話翻訳映像提供促進助成金)의 조성대상은 대상기간(회계연도기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 방송프로그램(시청연령제한 프로그램 제외)에 정보·의사소통 지원용구(후생노동성 고시 제529호)를 개입시켜 수어영상을 합성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수어번역 영상을 제작·제공(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사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조성체계 및 지원내용 >



※ 출처 : 정보통신연구기구 홈페이지

조성금 액수는 조성대상 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경비 중 정보통신연구기구가 조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경비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125) <https://www2.nict.go.jp/barrierfree/106/index.html>

③ 생방송 자막 프로그램 보급촉진 조성금¹²⁶⁾

본 조성금(生放送字幕番組普及促進助成金)은 생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부여하는 설비에 대한 정비(整備)의 정비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정비비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생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자막 부여 설비의 보급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개시하였다.

< 조성체계 및 지원내용 >



※ 출처 : 정보통신연구기구 홈페이지

조성대상은 생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부여하기 위한 기기(助成対象機器)¹²⁷⁾의 정비(조성대상기기를 기존 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개수(改修)등 포함)로, 정보통신연구기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지조사비, 설치공사비, 기존설비개수비(既存設備改修費)¹²⁸⁾는 제외한다.

조성금 액수는 조성대상기기 등의 정비와 관련되는 경비 금액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한다. 신청 총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에 맞춰 조정이 이뤄진다.

조성조건으로 본 조성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을 것, 조성대상 사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자기부담분 조달에 대하여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조성대상 사업 관련 경리와 그 밖의 사무에 대한 적합한 관리체제 및 처리 능력이 있을 것, 조성대상 사업으로 기기를 정비한 다음 연도부터 5년 간 해당 기기의 이용계획 또는 이용방침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 신청자가 방송사업자와 다른 경우 해당 이용계획이나 이용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있을 것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육성에 관한 연수회

총무성은 2018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수화통역의 육성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26) <https://www2.nict.go.jp/barrierfree/108/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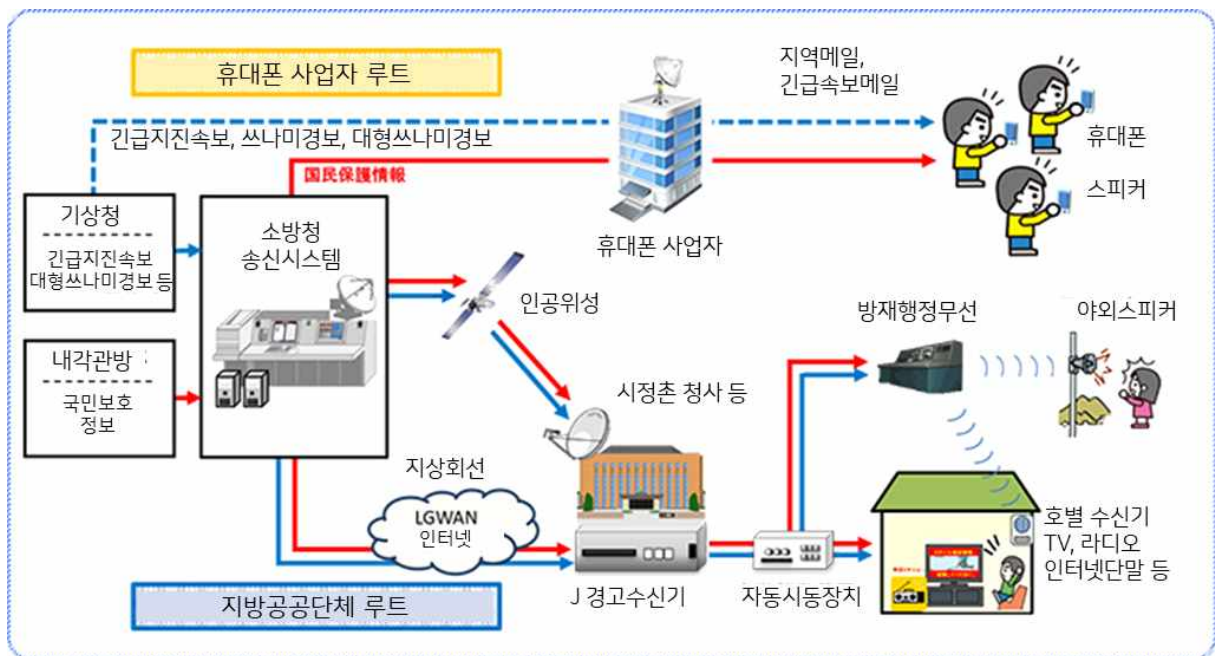
127) 생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부여하는 것에 한정하며, 사용하는 PC 및 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128) 원상회복을 위한 기존 설비의 수리나 갱신, 조성 대상 기기를 제외한 기존 설비의 갱신, 증설 등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2. 재난방송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의 지각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화산활동 역시 활발하다. 이지시마(千島), 나스(那須), 조카이(鳥海), 후지(富士), 노리쿠라(乗鞍), 하쿠산(白山), 기리시마(霧島) 등 7개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활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재난관리 및 방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있다. 기상청, 문부과학성, 내각관방, 소방청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공공단체가 함께 재난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재난관리시스템에 제공하여 재난상황 및 피해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관련 상황을 즉각 알릴 수 있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 이른바 J-경보(Jアラート)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정보는 지진정보, 해일정보, 화산폭발정보, 기상정보, 유사관련정보로 분류하여 상황에 맞는 경보가 발령되도록 하고 있다(정상구 외, 2016).¹²⁹⁾

< 전국순간경보시스템(J-경보) >



※ 출처 : 총무성소방청 홈페이지¹³⁰⁾

재난방송은 주관방송사인 NHK와 지역 민간방송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NHK는 법률에 의거 재난방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민간방송사의 경우 재난 발생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한 임시재해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129) 정상구·박현호·조경섭·이용태(2016).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시스템 현황,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1권 제3호, 112-121.

130) <https://www.fdma.go.jp/about/organization/post-18.html>

1) NHK

전국방송인 NHK는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른 지정 공공기관으로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재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을 지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지정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업무계획(防災業務計画)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그 요지(要旨)를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난방재계획의 주요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방재시설·설비의 정비와 확충, 직원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 방재훈련 실시, 재해응급대책 계획(방송대책, 방송시설, 수신, 관계기관 정보제공), 재해복구 등이다. NHK 방재업무계획 요지는 다음과 같다.¹³¹⁾

< 일본방송협회 방재업무계획(요지) >

제정 1963.10.16./개정 2022.11.24.

제1장 총칙

제1절 계획의 의의

이 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및 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난카이 해곡 지진, 일본해구·센지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 관련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재기본계획·지진방재기본계획·지진방재대책 추진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했다. 재해 시 방송의 송출 및 수신을 확보하고, 재해대책 조치의 원활, 적절한 실시를 도모해, 공공 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2절 방재체제의 확립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배치체제를 취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3절 방재시설·설비 등의 정비

재해 시 방송 송출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 시설·설비의 정비와 확충을 도모한다. 재해 응급·복구 대책에 필요한 자재의 비축, 정비를 도모한다.

제2장 재해예방계획

제1절 직원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

방재사상의 보급, 재해에 관한 지식의 주지, 철저하게 노력하는 동시에 재해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습회 등의 실시 및 지도를 실시한다.

제2절 방송에 의한 방재사상의 보급

평상시 재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적극 편성하여 시청자의 재해 예방, 응급조치, 피난 등에 관한 인

131) <https://www.nhk.or.jp/info/pr/bousai/>

식 향상에 노력한다. 관계 각 기관과 연계하여 재해에 관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절 방재훈련

제1 부내훈련(部内訓練)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원이나 정보 연락, 방송 송출, 시청자 대응, 방송 시설 방재 등의 대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

제2 관계기관과의 공동훈련(関係機関との共同訓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최하는 방재훈련, 방재연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제3장 재해응급대책 계획

제1절 방송대책

제1 재해 시 프로그램 편성 방침

재해 시 방송 프로그램은 재해의 종별·상황에 따라 긴급경보방송, 재해 관계의 정보, 경보, 뉴스 및 고지 사항, 해설·캠페인 프로그램 등 유효 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을 기동적으로 편성한다.

방송에서 외국인,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2 재해 시의 뉴스 취재

재해 시에 주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해의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적확한 방송을 한다.

제3 요청에 근거한 예보, 경보, 경고 등 방송

지방공공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경고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고지사항의 방송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임기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지역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방송시설 대책

재해 시에는, 방송시설에 대한 장애의 배제에 만전을 기한다. 방송설비나 중계회선, 연주소 등에 장애가 발생해 평상시의 운용이 곤란해졌을 때는 조치를 강구해 방송 송출의 확보에 노력한다.

제3절 수신 대책

재해 시에 수신기의 유지·확보를 위해 수신 설비의 복구나 피난소 등에 대한 수신기의 대여·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4절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재해 시에는 국가 비상재해대책본부나 관계부처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재해복구계획

재해복구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설비의 조기 복구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시 같은 종류의 피해

를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피해를 입은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신속·적확하게 피해상황을 조사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작성한다. 복구공사는 인원, 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진행한다.

제5장 지진방재강화계획과 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의 작성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에 따라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과 관련된 지진방재 강화계획을 작성한다. 「난카이 해곡 지진과 관련된 지진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일본해구·센지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과 관련된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지진방재대책 추진 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진방재대책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한편, NHK는 NHK방재 웹사이트를 통하여 재해정보, 재해 유형(지진, 단수, 화산 등)과 복구, NHK 방재 프로그램 '내일을 지키는 나비(明日をまもるナビ)', 시청자 유형(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기업·지자체·반사회)에 따른 방재대책, 방재정보와 재해정보를 제공하는 NHK의 공식 SNS 계정,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 NHK 방재 >

NHK 防災 いつか来る その日に備えて
いま知ってほしい、確かな情報をあなたに

気になることばを 検索 キーワード検索 検索

新潟県中越地震から20年／あすにかけ大気不安定

気象・災害の最新ニュースはこちら

エコノミークラス症候群を予防するポイント

- こまめに水分補給
- 定期的に運動・ストレッチ
- 弾性ストッキング着用

「エコノミークラス症候群」を防ぐ3つのポイント

新潟県中越地震 最大震度7 死者68人 避難生活は長期化

中越地震20年 被災地で血縁見つかる割合高く 医師注意呼びかけ

新潟県中越地震 4つの“教訓”から災害への備えを考える

北海道～近畿 あすにかけ大気不安定 浸水や突風などに十分注意

雷の音は落雷・突風の前ぶれ

頑丈な建物へ
窓から離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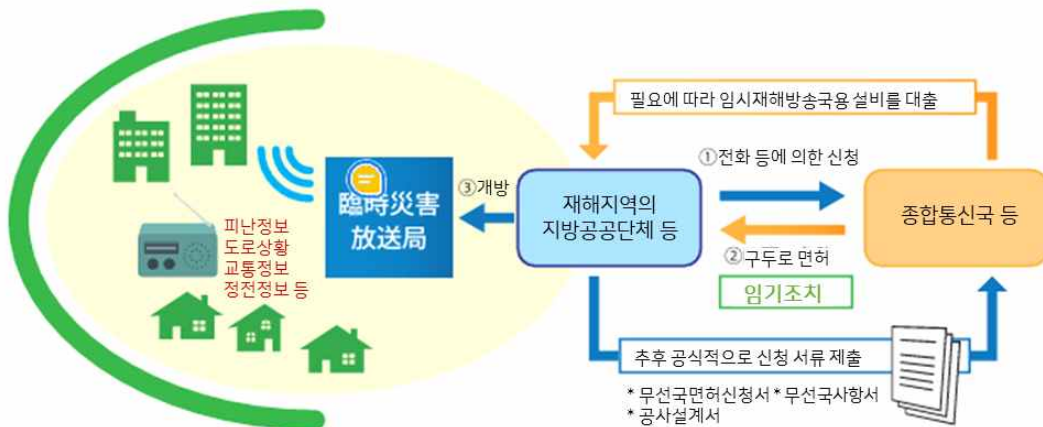
竜巻・突風 その時 前兆は？身の安全を守るには？

※ 출처 : NHK 홈페이지¹³²⁾

2) 임시재해방송국¹³³⁾

임시재해방송국이란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기타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지의 지방공공단체 등(재해대책방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단체)이 개설하는 임시적, 일시적 목적의 FM방송국이다. 방송프로그램은 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한 지원 및 구호활동 등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 임시재해방송국 면허수속(임기조치의 경우) >



※ 출처 : 총무성 홈페이지¹³⁴⁾

임시재해방송국을 개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신청절차를 밟아 방송국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시에는 임시조치로 신속히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즉, ①자치단체가 종합통신국에 전화 등으로 면허를 신청하면, ②종합통신국이 구두로 면허를 부여하고, ③자치단체는 임시재해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다. 추후 정식으로 신청서류(무선국 면허신청서, 무선국사항서, 공사설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자치단체는 임시재해방송국용 설비를 활용하여 지역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다만 무선국 개설·운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임시재해방송국은 1995년 1월 17일 효고현(兵庫県) 남부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당시 효고현(兵庫県)에서 재난·재해정보 전달을 위한 전용 방송국을 개설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 임시재해방송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운용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인근 이테와현(岩手県), 이바라키현(茨城県),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 아키타현(秋田県)에서 32개 임시재해방송국이 운영되었다(정상구 외, 2016).

132) <https://www.nhk.or.jp/bousai/>

133) <https://www.soumu.go.jp/soutsu/kanto/bc/rinsai/index.html>

134)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98666.pdf